

인천광역시 고령사회대응센터 정책연구 2025-2

ISBN 979-11-90449-14-4

인천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적정규모 추계 연구

책임연구원

김제희 인천광역시 고령사회대응센터 연구원

공동연구원

김수진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연구보조원

박민선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연구교수

목 차

요약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8
제3절 연구 추진 방향 및 일정	9
제2장 이론적 고찰	13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13
제2절 요양보호사 개요	27
제3절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개요	38
제4절 선행연구 검토	52
제3장 인천시 장기요양 수요 및 공급 현황	65
제1절 인천시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65
제2절 인천시 장기요양 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68
제3절 인천시 장기요양급여 이용 현황	75
제4절 인천시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 현황	78
제4장 인천시 요양보호사 및 교육기관 수급 추정	87
제1절 인천시 장기요양인정자 추계	87
제2절 인천시 요양보호사 공급 추계	96
제3절 인천시 요양보호사 수요 추계	108
제4절 인천시 요양보호사 수급 균형 도모	115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27
제1절 인천시 및 군·구별 영양보호사 교육기관 적정규모 추정	127
제2절 정책적 제언	129
참고문헌	137

표 목차

〈표 1-1〉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괴리	3
〈표 1-2〉 7대 특별 및 광역시 고령화율, 노인 수, 요양보호사 수 현황 및 증감률	5
〈표 1-3〉 7대 특별 및 광역시 고령화율, 노인 수 추계	6
〈표 2-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	16
〈표 2-2〉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체계	16
〈표 2-3〉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중 요양인정 조사 항목	18
〈표 2-4〉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개요	18
〈표 2-5〉 장기요양 등급별 판정기준	19
〈표 2-6〉 장기요양 재가급여 종류	21
〈표 2-7〉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분류	30
〈표 2-8〉 장기요양급여 유형별 서비스 제공	31
〈표 2-9〉 급여유형별 요양보호사 배치	33
〈표 2-10〉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34
〈표 2-11〉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시설 규모·구조 및 설비	41
〈표 2-12〉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직원배치 기준	42
〈표 2-13〉 실습 연계 가능 기관	44
〈표 2-14〉 교육 수강료	45
〈표 2-15〉 요양보호사 실습 가능 인원	46
〈표 2-16〉 출석 인정 일수	47
〈표 2-17〉 인천광역시 자체 지정 기준	50
〈표 2-18〉 인천광역시 군·구별 교육기관 정수(2020년 기준)	51
〈표 2-19〉 인천광역시 요양교육기관 추계 산식	53
〈표 2-20〉 인천광역시 군·구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추계 산식	54

〈표 2-21〉 서울특별시 요양보호사 추계 산식	57
〈표 3-1〉 연도 및 성별 의료보장 적용인구	66
〈표 3-2〉 군·구별 의료보장 적용인구	67
〈표 3-3〉 연령 및 성별 장기요양 신청자	69
〈표 3-4〉 자격별 장기요양 신청자	70
〈표 3-5〉 연령별 장기요양 판정자 및 인정자	71
〈표 3-6〉 성별 장기요양 판정자 및 인정자	72
〈표 3-7〉 자격별 장기요양 판정자 및 인정자	73
〈표 3-8〉 판정 등급별 특성	74
〈표 3-9〉 등급별 급여이용수급자	75
〈표 3-10〉 급여종류별 급여이용수급자	77
〈표 3-11〉 7대 특·광역시 장기요양기관 현황 및 증감률	78
〈표 3-12〉 인천시 군·구별 장기요양기관 현황 및 증감률	79
〈표 3-13〉 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기관 수 및 정원	81
〈표 3-14〉 인천시 요양보호사 현황	82
〈표 4-1〉 인천시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인정자 추이(2015~2020년)	87
〈표 4-2〉 인천시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인정자 변화(2021~2024년)	88
〈표 4-3〉 인천시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인정자 추계(2025~2032년)	90
〈표 4-4〉 인천시 군·구별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인정자 변화	91
〈표 4-5〉 인천시 군·구별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인정자 추계(2025~2035년)	94
〈표 4-6〉 인천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2024년 기준)	97
〈표 4-7〉 인천시 요양보호사 공급 현황	98
〈표 4-8〉 인천시 군·구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 인원	99

〈표 4-9〉 인천시 군·구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 인원_폐업기관 제외	100
〈표 4-10〉 인천시 군·구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인원(2021~2024년)	101
〈표 4-11〉 인천시 군·구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인원(2021~2024년)_폐업기관 제외	102
〈표 4-12〉 인천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및 현업종사 요양보호사 인원(2020~2024년)	103
〈표 4-13〉 인천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및 현업종사 요양보호사 인원(2020~2024년)_폐업기관 제외	104
〈표 4-14〉 인천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및 현업종사 요양보호사 추계(2025~2035년)	105
〈표 4-15〉 인천시 군·구별 현업종사 요양보호사 추계(2024~2035년)	107
〈표 4-16〉 인천시 요양보호사 수요 추이(2017~2024년)	108
〈표 4-17〉 인천시 요양보호사 수요 추계(2025~2035년)	110
〈표 4-18〉 인천시 군·구별 요양보호사 수요 추계	112
〈표 4-19〉 인천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규 지정 필요 여부(2025년 기준)	118
〈표 4-20〉 인천시 급여자 및 필요 요양보호사 추계(2025~2035년)	119
〈표 4-21〉 인천시 군·구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규 지정 필요 여부(2025년 기준)	121
〈표 4-22〉 인천시 군·구별 필요 요양보호사 추계(2025~2035년)	122
〈표 5-1〉 유희 요양보호사 유입 지원 맞춤형 교육체계(안)	130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추진 방향	9
〈그림 1-2〉 연구 추진 일정	9
〈그림 2-1〉 장기요양 인정 절차	20
〈그림 2-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 및 운영 체계	26
〈그림 2-3〉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절차	37
〈그림 2-4〉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절차	39
〈그림 4-1〉 인천시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인정자 추계(2025~2035년)	90
〈그림 4-2〉 인천시 군·구별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인정자 추계(2025~2035년)	95
〈그림 4-3〉 인천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및 현업종사 요양보호사 추계(2025~2035년) ..	106
〈그림 4-4〉 군·구별 현업종사 요양보호사 추계(2024~2035년)	107
〈그림 4-5〉 인천시 65세 이상 노인 급여이용자 및 필요 요양보호사 추계(2017~2035년) ..	111
〈그림 5-1〉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 사항	133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대수명 증가에 비해 건강수명이 정체된 상황은 노년기 돌봄 수요의 구조적 확대를 예고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안정적인 공급과 체계적인 양성·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지역별 수요 대비 교육기관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임
-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의 노인 인구 및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요양보호사 수요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 및 군·구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적정규모와 신규 지정 필요성을 검토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요양보호사 공급·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인천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적정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와 요양보호사 양성체계에 대한 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인천시 장기요양환경의 현황과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함

- 이를 위해 전국 및 인천시 장기요양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노인 인구, 장기요양 신청자·인정자 및 급여 이용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인천시 요양보호사 수요와 공급을 추계함
- 또한 수요·공급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시 및 군·구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적정규모를 산정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기관 운영 기준과 정책적 검토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제3절 연구 추진 방향 및 일정

- 본 연구는 인천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적정규모를 합리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단계적·체계적인 연구 추진 방향에 따라 수행됨
- 먼저 연구 착수 단계에서 연구계획서를 수립하고 착수보고회를 통해 연구 범위와 방법을 공유하였으며, 이후 문헌 및 통계자료 검토를 통해 장기요양 환경과 요양보호사 양성체계에 대한 기초 분석을 진행함
- 다음 단계에서는 인천시 장기요양 수요·공급 현황에 대한 추이 분석과 추계를 실시하고, 중간보고회를 통해 연구 진행 상황과 주요 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최종적으로는 연구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평가를 거쳐 인천시 정책 수립에 활용 가능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 일정으로 연구를 추진함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시설 또는 재가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해당 제도는 급속한 고령화, 후기고령자 증가, 핵가족화 심화, 노인가구 증가 및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등으로 가족 내 돌봄 기능이 약화된 사회적 배경 속에서 도입됨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 인정 절차를 통해 수급자를 결정하고,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등 급여 유형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됨
 - 해당 제도의 관리·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역할 분담을 통해 이루어지며,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의 계약을 통해 급여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이러한 제도 운영 구조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음

제2절 요양보호사 개요

-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에 배치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함
- 「노인복지법」에서는 요양보호사를 노인복지시설에 두어야 할 전문 인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주 안에 요양보호사가 포함됨을 통해 그 역할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다만, 법령상 요양보호사의 직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한편, 2024년 개정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생활복지시설 또는 재가서비스 현장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성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직무로 정의하고, 식사·목욕·이동·체위 변경 등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요양보호사는 법·제도적 근거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핵심 인력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다양한 급여 형태의 서비스를 수행하는 직무 체계를 갖추고 있음

제3절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개요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관으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수행함
-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편성, 강사 확보, 실습기관 연계 등 교육 운영 전반을 담당하며, 관련 법령과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 및 관리가 이루어짐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은 이론교육, 실기교육, 현장실습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기관은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서비스 현장에서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직무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함
- 또한 교육기관의 운영 현황은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수요와 요양보호사 공급 여건에 따라 교육기관의 설치·운영 규모에 차이가 존재함

제4절 선행연구 검토

- 요양보호사 및 장기요양 인력, 교육체계와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연구 동향을 정리함
- 선행연구들은 주로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요양보호사 인력의 수급 현황, 직무 내용, 근무 실태, 처우 수준, 이직 요인 등을 분석하며 고령화 심화에 따른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증가로 요양보호사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제시함
- 또한 인력 부족, 근로 조건의 불안정성, 직업 지속성 저하 등을 반복적으로 지적함
 - 한편, 요양보호사 양성 및 교육 관련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구성, 실습 운영, 교육의 질 관리 등에 대한 논의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지역별 장기요양 수요와 요양보호사 공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적정규모를 산정한 연구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기존 연구들은 제도 운영 실태나 인력의 질적 측면 분석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어, 교육기관 규모 산정을 위한 실증적 기준이나 지역 단위 분석에는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됨

제3장 인천시 장기요양 수요 및 공급 현황

제1절 인천시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 인천시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구성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유사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음
- 전체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같은 기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인천시 인구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확인됨
- 특히 노인인구는 남성과 여성 모두 증가하였으며, 증가 규모와 비율 측면에서 전체 인구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비교 결과, 전체 의료보장 적용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인구의 절대 규모와 비중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의료보장 체계 내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줌

제2절 인천시 장기요양 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 인천시의 장기요양 신청자 수와 인정자 수는 최근 연도에 걸쳐 전반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대상 인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신청자 증가와 함께 인정자 수도 동반 상승하여, 장기요양 인정률 역시 일정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변동하는 양상을 보임
- 연령대별로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신청 및 인정자 규모가 크게 나타나 이를 의료보장 적용인구 중 노인 인구 증가 추세와 연계하여 살펴봄

제3절 인천시 장기요양급여 이용 현황

- 인천시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급여 이용 수급자 수는 최근 몇 년간 증가 추이를 보임
- 급여 유형별로는 재가급여 이용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 전반에서 이용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제4절 인천시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 현황

- 인천시의 장기요양기관 수는 최근 몇 년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어,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위한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기관과 시설급여기관으로 구분되며, 급여 유형별로 기관 분포와 규모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
- 또한 요양보호사 수 역시 장기요양기관 증가와 함께 확대되고 있으며, 기관 유형 및 지역별로 인력 규모의 분포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제4장 인천시 요양보호사 및 교육기관 수급 추정

제1절 인천시 장기요양인정자 추계

- 인천시 장기요양인정자 추계는 최근 연도까지의 장기요양 인정자 현황과 인구 구조 변화를 기초로 분석함
- 과거 인정자 수 추이와 노인 인구 증가 양상을 반영하여 장래 장기요양인정자 규모를 산정하였으며, 추계 결과 인천시 장기요양인정자 수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함
- 이러한 증가는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인구가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반영한 것임
- 연도별 추계 결과를 보면 장기요양인정자 수는 중·장기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요양보호사 수요 및 교육기관 수급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 지표로 활용함

제2절 인천시 요양보호사 공급 추계

- 인천시 요양보호사 공급 추계는 기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현황과 활동 현황, 장기요양기관 종사 인력 규모 등을 기초로 산정함
- 추계 과정에서는 연도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수와 실제 활동 요양보호사 규모를 반영하여, 장래 시점의 요양보호사 공급 규모를 추정함
- 이를 통해 인천시 내 요양보호사 공급이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제시함
- 추계 결과, 인천시 요양보호사 공급 규모는 향후에도 일정 수준의 증가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해당 공급 추계 결과를 이후 요양보호사 수요 추계와 비교·분석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함

제3절 인천시 요양보호사 수요 추계

- 인천시 요양보호사 수요 추계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현황과 급여 유형별 이용 구조, 장기요양인정자 추계 결과를 기초로 분석함
- 추계 과정에서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급여 유형별 요양보호사 필요 인력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하여 인천시 전체 요양보호사 수요 규모를 추정함
- 또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추이와 인정자 증가 흐름을 반영하여 연도별 요양보호사 수요 변화를 제시함
- 수요 추계 결과, 인천시 요양보호사 수요는 장기요양 인정자 증가와 급여 이용자 확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절에서 제시된 요양보호사 수요 추계는 이후 요양보호사 공급 추계와의 비교를 통해 수급 균형을 검토하고, 교육기관 적정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됨

제4절 인천시 요양보호사 수급 균형 도모

- 인천시 요양보호사 수급 균형 분석 결과, 장기요양인정자 및 급여 이용자 증가 추세를 반영할 경우 향후 요양보호사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
- 요양보호사 공급 역시 증가될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기적으로는 수요 증가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해 시점에 따라 일정 수준의 수급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수급 격차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구조와 급여 유형별 인력 소요를 반영한 결과로, 단기보다는 중·장기 시점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또한 현업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비율을 고려할 경우, 단순 자격 취득자 수 증가만으로는 요양보호사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임이 함께 확인됨
- 이에 따라 향후 요양보호사 수급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활동률을 반영한 신규 자격 취득자 규모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인천시 및 군·구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적정규모 추정

- 인천시 장기요양인정자 추계와 요양보호사 수요·공급 분석을 종합한 결과, 지역별로 교육기관 운영 여건과 인력 수급 구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천시 차원에서는 요양보호사 수요 증가에 따라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지속되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나, 군·구별로는 장기요양 수요 규모, 요양기관 분포, 기존 교육기관 운영 현황 등에 따라 교육기관 적정규모가 상이하게 나타남
- 특히 일부 군·구에서는 요양보호사 수급 여건과 비교하여 교육기관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교육기관 접근성이 제한적인 것으로 제시되어 지역 간 편차가 확인됨
- 이에 따라 교육기관 적정규모 추정 결과는 인천시 차원의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군·구별 장기요양 수요와 인력 수급 여건을 반영한 교육기관 운영 관리의 필요성이 시사됨

제2절 정책적 제언

- 정책적 제언에서는 요양보호사 수급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함
- 먼저 자격을 취득했으나 현재 활동하지 않고 있는 유휴 요양보호사의 현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재취업 연계, 정보 제공 등의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함
- 아울러 요양보호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규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현업에 종사 중인 요양보호사의 이탈을 최소화하고 재직 유지율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함
- 또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규 지정과 관련해서는 향후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군·구 구조 변화와 행정 여건을 고려한 검토 필요성을 제시함

- 이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 역시 중·장기적 행정체계 변화를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함
- 더불어 교육기관의 양적 확대 관리와 함께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인증제 도입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 및 실습 관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함

1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3절 연구 추진 방향 및 일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사회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10년 10.9%에 불과하던 노인인구(65세 이상) 비율은 2020년 16.4%로 증가하였으며,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 수준인 25.3%에 이르고,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통계청, 2024a; 통계청, 2025a)
- 이러한 추세는 곧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의미하며, 인구구조의 변화는 복지, 노동, 보건, 주거, 지역사회 돌봄 등 다차원적 영역에서의 정책 대응을 요구하고 있음
- 특히 <표 1-1>과 같이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고령화 대응의 핵심 과제로 지적됨
- 2012년 기대수명은 80.9세에서 2022년 82.7세로 증가하였으나, 건강수명은 65.7세에서 65.8세로 사실상 정체된 상태에 머물러 있음(통계청, 2023)
- 이는 장수(長壽) 사회로의 진입이 반드시 '건강한 노후'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돌봄 수요의 증가가 불가피함을 시사함

<표 1-1>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괴리

구분	2012년	2022년
기대수명	80.9세	82.7세
건강수명	65.7세	65.8세

자료: 통계청(2023), 「2022년 생명표」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 고령화의 가속화는 개인과 가족의 부양 부담을 넘어 사회 전체의 돌봄 책임으로 확장되고 있음
- 가족 구조의 변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전통적 가족 부양 기능이 약화되었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안으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됨
- 이 제도는 고령자 및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에 따른 돌봄 서비스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제도 시행 이후 노인 돌봄의 공공 책임성이 크게 강화됨
- 그러나 제도 초기에는 요양보호사 수요 예측 및 공급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인력 과잉과 품질 저하 문제가 병행되는 현상이 발생함(윤민석, 문진영, 2019)
- 특히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확대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켰으며,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양성과 교육기관 운영의 체계화 필요성이 제기됨
- 돌봄 인력의 질은 서비스 품질과 직결되므로, 양적 확대뿐 아니라 교육 품질과 인력 관리의 전문화가 핵심 과제가 됨
- 요양보호사 제도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과 함께 본격 도입되었으며, 2009년 기준 전국 1,078개 교육기관에서 약 50만 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됨
-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인력은 필요 인원의 약 10분의 1 수준에 그치며, 이는 과잉 배출로 인한 인력 불균형 문제를 야기함(박명선, 강상목, 2010)
-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교육기관의 난립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일부 기관의 부실 운영과 교육 품질 저하 문제가 제기됨(엄기욱, 2011)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0년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제도화와 교육기관 지정제가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지역 간 공급 격차와 기관 운영의 질적 편차는 지속되고 있음
- 인천시는 최근 10년간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며,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음

- <표 1-2>에 의하면, 2014년 인천시의 고령화율은 10.3%였으나, 2024년에는 17.7%로 상승하여 71.8% 증가하였고, 이는 전국 평균(57.5%)보다 높은 수준임
- 같은 기간 노인 인구는 29만 8천 명에서 53만 4천 명으로 78.9% 증가하여 전국 평균 증가율(57.3%)을 크게 상회함
- 요양보호사 인력 또한 2014년 1만 7천 명에서 2024년 4만 명으로 증가하여 135.3% 증가율을 기록, 전국 평균(138.6%)에 근접하는 수준을 보임
- 이는 인천시가 돌봄 인력 수급 측면에서 비교적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음을 보여주나,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요양보호사 인력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향후 인력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표 1-2> 7대 특·광역시 고령화율, 노인 수, 요양보호사 수 현황 및 증감률

(단위: 천명, %)

구분	2014년			2024년			증감률		
	고령화율	노인	요양보호사	고령화율	노인	요양보호사	고령화율	노인	요양보호사
전국	12.7	6,521	267	20.0	10,257	637	57.5	57.3	138.6
서울시	12.0	1,217	50	19.4	1,814	107	61.7	49.1	114.0
부산시	14.0	492	17	23.9	781	44	70.7	58.7	158.8
대구시	12.2	304	13	20.9	493	31	71.3	62.2	138.5
인천시	10.3	298	16	17.7	533	40	71.8	78.9	150.0
광주시	10.8	160	10	17.5	247	24	62.0	54.4	140.0
대전시	10.3	158	11	18.0	259	20	74.8	63.9	81.8
울산시	8.3	97	3	17.2	189	10	107.2	94.8	233.3

자료: 통계청(2025b),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통계청(2025c), 주민등록인구현황.

- 인천시는 이미 고령사회 단계를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에 근접한 상황으로, 2025년 기준 노인 인구는 약 55만 6천 명, 고령화율은 18.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표 1-3〉 참고)
- 더 나아가 2050년에는 노인 인구가 115만 6천 명으로 약 2배 증가하고, 고령화율 또한 38.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
- 이러한 변화는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인력의 공급 균형 및 적정규모 관리가 필수적임
- 특히 향후 인천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령 인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구별 인력 수요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인력 수급 전략 마련이 요구됨
- 따라서 인천시는 향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적정규모를 산출하여 신규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체계적인 인력 공급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 이는 초고령사회로의 전환 속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인천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됨

〈표 1-3〉 7대 특·광역시 고령화율, 노인 수 추계

(단위: 천명, %)

구분	2025년		2030년		2040년		2050년	
	고령화율	노인 수	고령화율	노인 수	고령화율	노인 수	고령화율	노인 수
전국	20.3	10,514	25.3	12,980	34.3	17,151	40.1	18,908
서울시	19.9	1,856	24.2	2,198	31.6	2,751	36.6	2,959
부산시	24.5	793	29.7	925	38.0	1,083	43.2	1,088
대구시	21.2	495	26.7	600	36.5	753	42.0	775
인천시	18.2	556	23.5	1,011	32.4	1,011	38.5	1,156
광주시	17.9	260	22.6	423	32.1	423	38.2	462
대전시	18.3	269	23.2	435	31.8	435	37.2	474
울산시	17.8	196	24.4	347	36.1	347	43.0	367

자료: 통계청(2024a). 「장래인구추계」.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인천시의 급속한 고령화 및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지역별 요양보호사 공급과 교육기관 운영의 균형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짐
 - 인천시 노인 인구 및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요양보호사 수요 추정
 - 수요 및 공급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시 차원의 교육기관 적정규모 및 신규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 제시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 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요양보호사 양성체계 분석
- 인천시 장기요양환경 현황 및 추이 분석
- 인천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적정규모 추계

2.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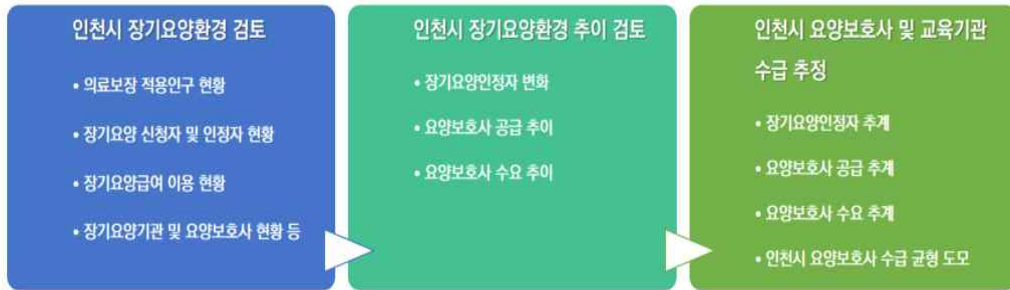
- 문헌 및 통계자료 검토
 - 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 관련 문헌 검토
 - 타지역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적정규모 추계 연구 검토
 - 전국 및 인천시 장기요양 관련 통계자료 수집 및 검토
- 자료 분석¹⁾
 - 기(既)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인천시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및 공급 추계
 - 인천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적정규모 산정

1) 자료 분석을 통해 산출한 추계값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 문제에 따라 총계와 항목 간 합이 다를 수 있음.

제3절 연구 추진 방향 및 일정

1. 연구 추진 방향

〈그림 1-1〉 연구 추진 방향



2. 연구 추진 일정

〈그림 1-2〉 연구 추진 일정

사업 흐름도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구수행계획서 제출													
○ 연구계획서 작성													
○ 연구 착수보고회													
연구진행													
○ 문헌 및 통계자료 검토													
○ 자문회의													
○ 추이 분석 및 추계													
○ 보고서 작성													
중간보고													
○ 중간보고회 개최 및 의견 수렴													
최종보고													
○ 최종보고회 개최													
○ 연구심의													
○ 연구보고서 발간													

2

이론적 고찰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제2절 요양보호사 개요

제3절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개요

제4절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및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시설이나 재가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법제처, 2024)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배경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배경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선우덕 외, 2012; 양옥남 외, 2012)
 -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후기고령자를 중심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요구되었음
 - 핵가족화의 심화, 노인가구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등으로 가족 내 부양 기능이 약화되어 가정 내 수발 인력이 급격히 감소하였음
 -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경우 민간시장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높은 비용이 발생하였고, 장기요양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가정이나 지역사회에 방치되거나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증가되었음
 - 기존 노인복지 서비스 체계는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층 노인으로 이용 범위가 제한되었으며, 서비스 제공 여부가 당사자의 의사보다 행정적 결정에 의해 좌우되는 한계가 있었음

- 복지와 의료가 분리된 구조에서는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노인에 대한 통합적 대응이 어려웠으며, 이러한 사회·가족 구조 변화와 기존 제도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장기요양보장체계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됨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추진 과정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인구 고령화에 따른 가족·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가정에서 해결하기 어려워진 고령자의 장기요양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 복지대책의 하나로 도입·시행됨(선우덕 외, 2012)
- 정부는 2000년 초 노인 요양보호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호 정책기획단」을 발족하고 약 1년간의 연구를 거쳐 「노인장기요양보호 종합대책 방안」을 발표함(국민건강보험공단, 2025a; 보건복지부, 2015; 박하정, 2008; 양옥남 외, 2012)
 - 2001년 7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위원회’ 설치로 노인요양보호 문제가 정부 차원의 정책과제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 7월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장기요양보호 정책 시행 계획이 포함됨
 - 2004년 3월 보건복지부는 「공적노인요양보장실행위원회」와 「실무기획단」을 설치해 제도의 구체적 실행모형을 개발하고, 2005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함
- 2005년 10월 「노인수발보장법」 명칭으로 「장기요양법」안을 입법예고하고, 2006년 2월 국무회의 통과 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1년 2개월간의 심의를 거쳐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함(국민건강보험공단, 2025a; 보건복지부, 2015)
- 2007년 10월 1일 1단계 시행령·시행규칙이, 2008년 7월 1일 2단계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며 본격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는 5년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도록 규정함(보건복지부, 2013, 2018, 2023a)

- 제1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3~2017): 보장성 확대,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전달체계의 효율성 강화, 재정 관리 강화
 -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18~2022): 돌봄의 공공성과 책임성 제고 및 장기요양 제도의 보장성 강화, 지역사회 돌봄 강화, 인프라 조성, 장기요양 지속가능성 담보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재가 돌봄 서비스 강화,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 제도 지속가능성 제고
- 2016년 제6조의2(실태조사)가 신설됨에 따라, 2019년을 시작으로 3년마다 장기요양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음
-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규모, 급여 수준 및 만족도, 장기요양기관 관련 사항, 장기요양요원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 등을 조사함
- 이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0년대 초반 정책 논의와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도입되었으며, 이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도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있음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 장기요양인정 적용 대상자, 신청자, 인정자의 범위는 <표 2-1>과 같음(국민건강보험공단, 2025a)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와 그 피부양자(건강보험 적용 기준 동일),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포함됨
 -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그대로 적용함
 -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적용 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함
 - 장기요양 인정은 신청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부여되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됨

〈표 2-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

구분	적용 대상자 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	전국민[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건강보험과 동일) + 의료급여수급권자]
보험료를 부담하는 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 하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개별보험료는 건강보험제도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그대로 활용하여 산정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
장기요양 인정자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중 6개월 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25a).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p.xxviii.

2) 이용 체계

○ 〈표 2-2〉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체계는 총 5단계로 구분됨

〈표 2-2〉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체계

구분	내용
1단계 (인정신청)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2단계 (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 및 판정 - 공단직원이 조사한 인정조사 결과 및 의사소견서 등을 참고하여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판정
3단계 (장기요양급여 이용)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송부 - 수급자는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고려하여 희망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자의 가정에서 또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음
4단계 (비용 청구, 심사 지급)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비용 청구 - 공단은 공단부담금(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대상 금액 제외) 심사 후 지급
5단계 (이용지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일반사항, 이용절차 및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장기요양기관 정보 제공 등 수급자를 위한 이용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25a).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p.xxviii-xxx.

(1) 인정 신청

-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함(국민건강보험공단, 2025b)
 - 대리인의 경우 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제한함
 - 신청 방법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전국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인터넷, 우편, Fax,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이 있음(국민건강보험공단, 2025b)
 - 인터넷·앱으로 신청할 경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며, 65세 미만 자의 최초 신청이나 외국인의 신청은 불가능함
 - 신청 시 구비서류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진단서), 본인이나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포함됨(국민건강보험공단, 2025b)
 - 65세 미만의 경우 노인성 질병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함

(2) 인정 조사 및 등급 판정

- 신청 대상자가 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됨)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등급 판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함(국민건강보험공단, 2025b)
 -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구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법제처, 2024)
 - 공단 직원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기반으로 신청인의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인지기능, 간호처치, 재활영역, 환경상태, 서비스 욕구 등 총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함
 - 이 중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개 영역(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52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 산정에 이용함
 -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중 요양인정 조사 항목은 <표 2-3>과 같음

〈표 2-3〉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중 영양인정 조사 항목

영역	항목		
신체기능 (12항목)	- 옷 벗고 입기 - 식사하기 - 일어나 앉기 - 화장실 사용하기	- 세수하기 - 목욕하기 - 옮겨 앉기 - 대변 조절하기	- 양치질하기 - 체위 변경하기 - 방 밖으로 나오기 -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 (7항목)	- 단기 기억장애 - 날짜 불인지 - 장소 불인지 -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 지시불인지 - 상황판단력 감퇴 - 의사소통/전달장애	
행동변화 (14항목)	- 망상 - 환청, 환각 - 슬픈 상태, 울기도 함 - 불규칙 수면, 주야혼돈 - 도움에 저항	- 서성거림, 안절부절못함 - 길을 잃음 - 폭언, 위협 행동 - 밖으로 나가려함 -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 물건 망가트리기 - 돈/물건 감추기 - 부적절한 옷 입기 - 대/소변 불결 행위
간호처치 (9항목)	- 기관지절개관 간호 - 흡인 - 산소요법	- 경관영양 - 욕창간호 - 암성통증간호	- 도뇨관리 - 장루간호 - 투석간호
재활 (10항목)	운동장애(4항목)		관절제한(6항목)
	- 우측상지 - 좌측상지	- 우측하지 - 좌측하지	- 어깨관절 - 고관절 - 팔꿈치관절 - 무릎관절 - 손목 및 수지관절 - 발목관절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25b). <https://www.longtermcare.or.kr>.

○ 시·군·구 단위로 설치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보건·복지·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에서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수급자)로 판정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대한 간략한 정리는 〈표 2-4〉와 같음

〈표 2-4〉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개요

구분	내용
기능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건보공단에 둠)

구분	내용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단위로 설치 - 다만,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2개 이상의 등급판정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2개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위원회 설치 할 수 있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 다만, 2개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위촉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15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의료인, 사회복지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 그 외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건보공단 이사장이 위촉함.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각각 포함되어야 함
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급판정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해당 법에서 정한 것 외에 등급판정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자료: 양옥남 외(2012). 「노인복지론」, 법제처(20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2조 및 제53조 내용을 이용하여 재구성.

-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반으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의 필요성 등을 등급판정기준(〈표 2-5〉 참고)에 따라 심의 및 판정함.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음

〈표 2-5〉 장기요양 등급별 판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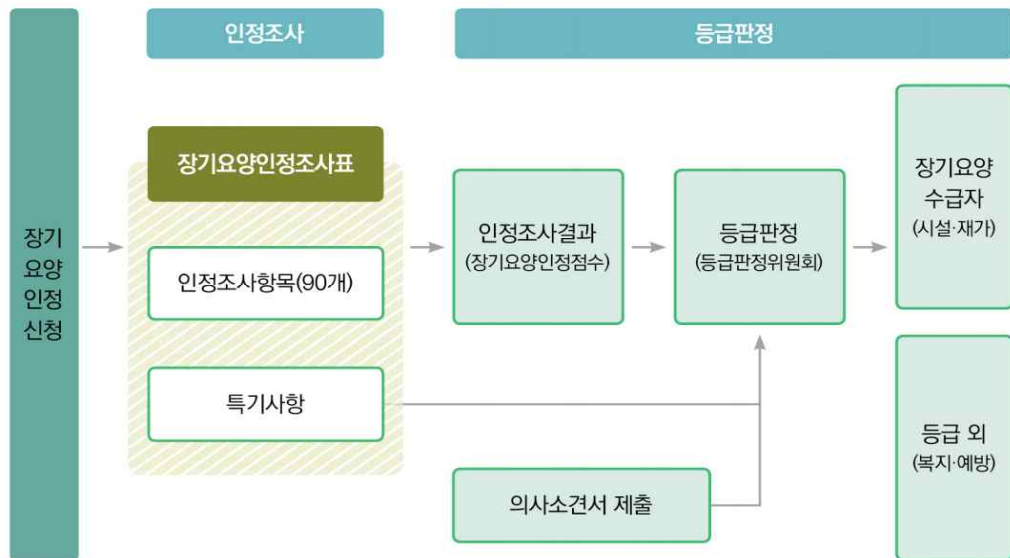
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 인정 점수
1등급	- 일상생활 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95점 이상
2등급	- 일상생활 시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 일상생활 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60점 이상 75점 미만

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 인정 점수
4등급	- 일상생활 시 일정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한정)환자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한정)환자	45점 미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25a).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p.xxxiv.

○ 상기 기술한 장기요양등급 인정 절차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 2-1>과 같음

<그림 2-1> 장기요양 인정 절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25a).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p.xxxii.

(3) 결과 통보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

-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장기요양등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송부함(법제처, 2024)
 - 장기요양인정서에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 외 보전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이 기입되어야 함
 -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시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송부하여야 함
-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수급자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희망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해당 기관과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한 후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또는 시설급여(요양시설 이용)를 받음

(4) 비용 청구 및 지급

-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 청구 시 공단은 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함

3) 장기요양 급여 종류

-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는 이용하는 서비스에 따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의 세 가지로 구분됨

(1) 재가급여

-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가 포함됨.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2-6>과 같음

<표 2-6> 장기요양 재가급여 종류

종류	내용
방문요양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종류	내용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 급여
방문간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요원(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단기보호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25a).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p.xxxvi.
 국민건강보험공단(2025b). <https://www.longtermcare.or.kr>.

(2) 시설 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근거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의미함

(3) 특별현금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면 특별 현금 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포함됨
 -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의 법적 근거는 존재하나, 이를 실제 시행할 수 있는 하위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음
 - 가족요양비는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재가 급여 중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함(법제처, 2024)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 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월 233,400원이 지급됨(국민건강보험공단, 2025b)

4)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재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재원으로는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자체 부담금’, ‘본인 부담금’이 있음(국민건강보험공단, 2025a)

(1) 장기요양보험료

- 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95%로,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됨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2.95%)
 - * 장기요양보험료율(12.95%)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 보험료율: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 직장지역가입자의 경우 100% 본인이 부담함(세대 단위)
 -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함
 - 공무원·교직원인 직장가입자와 소속 국가·지방자치단체·사립학교 각각 50%씩 부담(사립학교의 경우 당해 학교가 30%, 국가가 20% 부담)

(2) 국가 및 지자체 부담액

- 국가는 매년 예산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함

(3) 본인 부담금

-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는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 수급자 일부 부담(본인 일부 부담금), ‘수급자 부담 감경’, ‘수급자 전액 부담’
 - 다만,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음
- 수급자 일부 부담(본인 일부 부담금):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재가급여) 또는 20%(시설급여)를 부담함
- 수급자 부담 감경: 본인 일부 부담금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차등 감경하며,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 수급자 전액 부담: 다음과 같은 비용은 전액 수급자가 부담함
 - 식재료비, 상급 침실 이용에 대한 추가 비용, 이미용비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한 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과 다르게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한 경우 그 차액

5)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리 및 운영 체계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관리 및 운영하는 주체로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됨. 각 주체별 역할은 다음과 같음(국민건강보험공단, 2025a)

(1)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보험사업 관장

○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2)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징수·재정 운영

○ 신청인에 대한 조사

○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공 및 장기요양인정서 작성

○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 수급자 및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안내·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심사 및 지급, 특별현금급여 지급

○ 장기요양급여 제공 내용 확인

○ 장기요양사업 관련 조사, 연구, 홍보

○ 노인성질환 예방 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부당이득금 부과·징수 등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 개발과 장기요양급여 비용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장기요양 기관 설치 및 운영

○ 그 외 장기요양사업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한 업무

(3)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급여 제공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설치 및 지정

○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공단에 청구

(4) 지방자치단체

○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노인성질환예방사업
-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지정 권한
- 각 주체별 역할을 종합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 및 운영체계는 <그림 2-2>와 같음

<그림 2-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 및 운영 체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25a).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p.xlii.

제2절 요양보호사 개요

1. 요양보호사 개념 및 법적 근거

- 요양보호사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살펴보기 위해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4년 개정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그리고 「2025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기준으로 검토함

1) 「노인복지법」에서의 요양보호사 정의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법제처, 2023)
- 그러나 요양보호사가 제공해야 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나 내용에 대한 명시는 제시되어 있지 않음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의 요양보호사 정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음
- 다만, 제2조 제5항(정의)에서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법제처, 2024), 이를 통해 장기요양요원에 요양보호사가 포함됨을 추측할 수 있음
-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가(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이하 “요양보호사”라 한다.)’로만 명시되어 있음(법제처, 2025a)

- 이처럼 법령에서는 요양보호사의 개념을 간접적으로 설명할 뿐, 그 업무 범위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3) 2024년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의 요양보호사 정의

- 2024년 개정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역할에 대해 ‘주로 생활복지시설 또는 재가 서비스를 통해 방문한 가정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성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한다.’라고 명시함(통계청, 2024b)

- 주요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식사, 목욕, 대소변 처리, 옷 갈아입기, 이동, 몸 위치 및 자세 변환, 체위 변경 등
- 산책, 병원동행, 보행훈련 등 간단한 재활훈련과 같은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지원
- 세탁, 물건 사기, 식사 준비 및 조리 지원, 은행 일 등 업무지원
-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등 기타 심리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4) 「2025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서의 요양보호사 정의

- 보건복지부의 「2025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서는 ‘요양보호사란 일정 기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 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으로 정의됨(보건복지부, 2025)

-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요양보호사’의 개념을 종합하면, 노인 및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성인의 신체 및 가사지원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으로 정의될 수 있음

2. 요양보호사의 직무 및 업무

-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은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직무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법제처, 2023)
 - 요양보호사 양성 지침은 요양보호사 업무내용을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함(보건복지부, 2025)
-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 교재는 요양보호사 업무와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유형(〈표 2-7〉 참고)이 일치한다고 설명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분류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방문목욕’ 등이 있음(보건복지부, 2024)
 -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세면 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체위 변경 등의 서비스를 의미함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외출 동행, 산책 등 개인 활동 지원(대상자의 사회생활 유지·지원)과 식사 준비, 청소 및 세탁 등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대상자 개인 일상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함
 - 정서지원 및 의사소통 서비스: 말벗, 격려, 생활 상담, 의사소통 도움 서비스 등을 포함함
 - 인지 지원 서비스: 인지관리지원(행동 변화 감소 도움 및 대처, 수급자와 수발자 안전 관리 도움,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인지활동 지원(인지 자극 활동 및 인지 기능 향상 프로그램 준비, 실행 등)의 서비스를 의미함
 - 방문목욕 서비스: 목욕 장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재가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입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지켜보기, 목욕 기계 조작 등을 포함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간호처치 서비스 등은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아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단독 또는 전적 수행 업무에서는 제외됨

〈표 2-7〉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분류

분류	표준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 도움, 구강청결 도움, 식사 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기 도움, 머리 감기 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 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개인 활동 지원, 식사 준비,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정서지원, 의사소통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인지지원 (인지관리지원, 인지활동지원)	인지 행동 변화 관리 등 인지 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방문목욕	입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도움, 지켜보기, 목욕 기계 조작, 욕실 정리 등
건강 및 간호관리	관찰 및 측정, 건강관리, 간호관리, 응급서비스
기능회복훈련서비스	신체-인지 기능 향상 프로그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인지 기능 향상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시설환경관리서비스	침구-린넨 정리, 환경관리, 물품관리, 세탁물관리

자료: 보건복지부(2024). 「2024년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p.64.

-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는 숙련된 수발자, 정보 전달자, 관찰자, 말벗과 상담자, 동기 유발자, 옹호자의 역할을 수행함(보건복지부, 2024)
- 업무 수행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로, 수급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에 명시되어 있음(법제처, 2024)

제28조의2(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3. 급여유형별 서비스 및 요양보호사 배치

-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로 제시하면 <표 2-8>과 같음(보건복지부, 2024)
-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수급자의 신체활동,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임
 - 방문간호는 장기요양요원 중 간호사 등 특별한 자격을 가진 이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요양보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음
-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를 의미함

<표 2-8> 장기요양급여 유형별 서비스 제공

구분		표준서비스 내용
재가 급여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단기보호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판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기타 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설 급여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10인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9인 이하)

자료: 보건복지부(2024), 「2024년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p.55.

-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배치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음
 - 「노인복지법」상 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 : 장기요양기관(요양 및 재가),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제외)
- ※ 요양병원 등 병원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간병인 및 자원봉사자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제처, 2024)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법제처, 2025b)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유형별 인력 배치는 <표 2-9>와 같음²⁾
- 재가급여: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 15명 이상이 배치되어야 하고³⁾, 방문 목록은 2명 이상 배치되어야 함. 주·야간보호시설은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단기보호시설은 4명당 1명 이상 배치되어야 함
 -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 이용자 4명당 1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배치되어야 함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배치되어야 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자 3명당 1명이 배치되어야 함
 - 노인요양시설의 치매전담실의 경우 입소자 2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치되어야 하고,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 배치가 필요함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법제처, 2025b)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1. 재가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

3)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방문요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는 10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고,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음(법제처, 2025c).

〈표 2-9〉 급여유형별 요양보호사 배치

구분		배치 규정	비고
재 가 급 여	방문요양	15명 이상 (농어촌 지역의 경우 5명 이상)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요양보호사 업무: 이용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 수행. 다만,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서비스 중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급만이 제공할 수 있음
	방문목욕	2명 이상	
	주·야간 보호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치매전담실의 경우 4명당 1명 이상)	치매전담: 주·야간 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단기보호	이용자 4명당 1명 이상	
시 설 급 여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2.1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요양보호사 업무: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 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형은 2.5명당 1명)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 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함

자료: 법제처(2025c).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이용하여 정리.

4.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 교육과정은 이론강의, 실기연습, 실습으로 구성됨. 신규자의 경우 이론강의 126시간, 실기연습 114시간, 현장실습 80시간 등 총 320시간을 이수해야 함(법제처, 2025c)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2-10〉과 같음(법제처, 2025c)

-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경력자와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국가자격(면허)소지자는 이론강의, 실기연습, 현장실습 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 감면될 수 있음(법제처, 2025c)

〈표 2-10〉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이론강의 (126시간) /실기연습 (114시간)	요양보호와 인권	요양보호 대상자의 이해	노인과 노화 과정 노년기 특성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	2	2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요양보호 업무	7	-
		인권과 직업윤리	노인의 인권보호 노인학대 예방	6	6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 관리	6	3
	노화와 건강증진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노인성 질환의 특성 노화에 따른 변화와 주요 질환	18	3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영양 운동 수면 성생활 약물사용 금연과 적정 음주 예방 접종 계절별 생활안전 수칙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상황별 의사소통의 실제 여가활동 돕기	8	8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요양보호 기록 업무보고 업무회의	6	8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이론강의 (126시간) /실기연습 (114시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신체활동 지원	식사와 영양 요양보호	6	7	
			배설 요양보호	5	10	
			개인위생과 환경 요양보호	5	10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5	7	
			안전과 감염 관련 요양보호	3	8	
		복지용구 사용	1	1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일상생활 지원의 원칙 식사준비와 영양관리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의복 및 침상 청결 관리 세탁하기 외출동행 및 일상 업무 대행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	4	8		
		치매 대상자와 가족	10	3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치매요양 보호기술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11	10	
			인지활동 지원 및 관리	5	4	
			임종 전 단계 임종기 단계 임종대상자의 지원 및 가족 요양보호	3	3	
		응급상황 대처 및 감염관리	응급처치(골절, 질식, 경련, 화상 등)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감염 관리	6	7	
			상황별 사례(재가, 시설, 응급)	9	6	
	소계				① 126	② 114
	현장실습 (80시간)	노인요양시설 실습	통합실습 I		40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통합실습 II		40	
		소계				③ 80
총 계(① + ② + ③)				320		

자료: 법제처(2025c).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5. 요양보호사 자격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초기인 2008년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치는 것만으로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음(법제처, 2008)⁴⁾
- 그러나 자격 부여 과정에서 전문성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10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었고,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제도가 도입됨
- 현재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에서는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법제처, 2023)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객관식 5지선다형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되며, 각 시험에서 만점의 60% 이상 득점해야 합격함(보건복지부, 2025)
 - 필기시험(총 35문항): 요양보호론(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영역에서 출제됨
 - 실기시험(총 45문항): 요양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됨
- 합격자 발표 후 자격시험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교육받은 교육기관 관할 시·도에 자격증 발급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제출 후 30일 이내 광역 시·도의 자격검정 결과, 정상수료로 인정될 경우 자격증이 발급됨(보건복지부, 2025)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은 요양보호사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9조의14에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함(법제처, 2023)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절차를 정리하면 <그림 2-3>과 같음

4)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법제처, 2008)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림 2-3〉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절차



자료: 보건복지부. (2025). 「2025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p.4.

3절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개요

1.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 본 연구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에서 명시한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을 의미함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서는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라 지칭하며,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해당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법제처, 2023)
-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당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기관장에 관한 별도의 자격요건 없이 시설·인력·장사기준 등을 갖춘 뒤, 시·도 담당부서에 신고하면 누구나 설치할 수 있는 ‘신고제’ 방식으로 운영되었음(법제처, 2008)⁵⁾
- 그러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과도하게 증가하며 운영의 질이 저하되었고, 경쟁 심화로 인해 편법·불법 운영의 문제가 나타남(엄기욱, 2011). 또한, 일부 교육기관이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과장 광고, 실습 면제, 교육시간 단축 등의 편법 운영을 시도하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신뢰가 저하되는 문제가 나타남(원시연, 2009)
- 이에 따라 2010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지정제로 전환함(법제처, 2023)⁶⁾

2.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절차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0에 규정됨(법제처, 2025c)

5)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 등)(법제처,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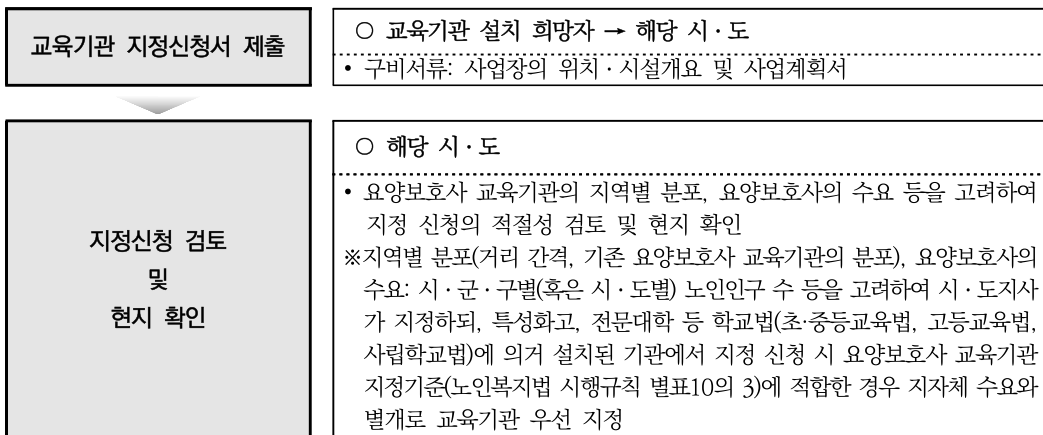
①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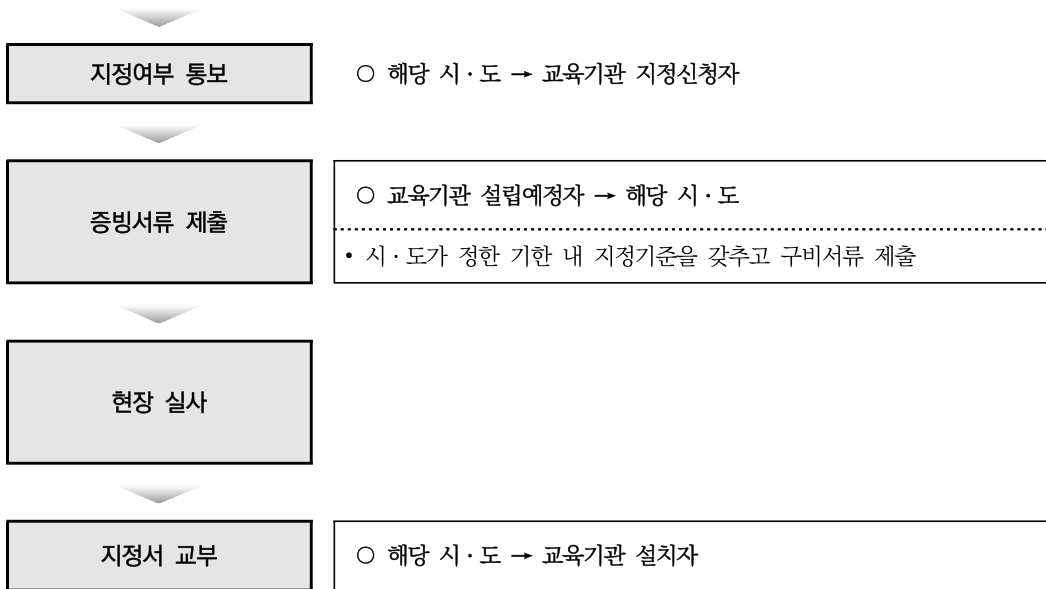
6)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법제처, 2023)

①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①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제출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해당 시·도 담당 부서에 교육기관 사업장 위치, 시설 개요 및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② 지정 신청 검토 및 현지 확인 : 지정 권한을 지닌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정 신청 적합 여부를 검토함. 이에 따라 담당 부서는 제출된 지정 신청서와 구비 서류(사업장 위치, 시설 개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현지 확인을 실시함
 - ③ 지정 여부 통보 : 최종 검토 과정이 완료되면 교육기관 지정 여부를 지정 신청자에게 통보함
 - ④ 증빙 서류 제출 : 지정 통지를 받은 자는 6개월 이내(부득이한 경우 1회, 최대 3개월 연장 가능)에 지정기준을 갖추고, 법인의 정관, 실습 연계 계약서, 시설 평면도 및 설비 목록, 토지·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교수요원의 자격·경력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 ⑤ 현장 실사 : 증빙서류와 지정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함
 - ⑥ 지정서 교부 : 서류 및 현장 실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정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가 교육기관 설치자에게 지정서를 교부함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절차를 도식화하면 <그림 2-4>와 같음

<그림 2-4>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절차





자료: 보건복지부(2025). 「2025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p.16.

3.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 기준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설치 지정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에 규정되어 있음(법제처, 2025c)
- 지정기준은 크게 시설기준, 학습교구기준, 직원 배치 기준으로 구분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시설기준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해야 함(보건복지부, 2025)
 - 설치 가능한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근린생활시설(1종, 2종),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광역시·도지사가 인정한 건축물임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강의실, 사무실, 소방시설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화장실, 급수시설, 채광·환기·냉난방 시설 등의 환경을 갖추어야 함(〈표 2-11〉참고)
- 강의실은 쾌적한 학습환경과 독립된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전용교실로 운영해야 함
- 다만,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나 직무역량 강화 교육에 한하여 활용 가능하며, 별도 자격증 취득 관련하여 활용할 수 없음

〈표 2-11〉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시설 규모·구조 및 설비

구분	내용
강의실·사무실	최소 연면적(강의실+사무실): 80 m^2 이상 강의실(1인당 면적기준) 가. 전용강의실 - 이론강의: 1명당 1 m^2 이상 - 실기연습: 1명당 2 m^2 이상 나. 통합강의실: 1명당 2 m^2 이상
소방시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함.

※ 그밖에 시설 규모에 맞는 적절한 화장실 및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채광·환기·냉난방 시설 등 보건 위생상적절한 학습 환경을 갖추어야 함

자료: 법제처(2025c),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

2) 학습교구기준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적인 이론적 교육과 실습 교육을 학습해야 하므로 시청각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 등 면밀한 학습교구를 갖춰야 함
- 실기연습의 경우 각 회당 교육 인원이 40명을 초과할 수 없음(보건복지부, 2025)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에서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다음과 같은 학습교구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함(법제처, 2025c)

- 인체모형, 이동식 침대(이불, 베개 포함), 휠체어, 이동 욕조, 미끄럼방지매트, 욕창 방지 매트리스, 욕창방지 방석 및 병원용 스크린을 각각 1개 이상 구비
- 기본용품(체온계, 전자혈압계, 시트, 방수포, 환자복 등), 식사지원용품(수저, 컵, 빨대, 식사보조도구 등), 이동지원용품(목발, 보행보조기 등), 응급처치용품(곡반, 솜, 반창고 등), 배변용품(기저귀, 기저귀 커버, 이동식 좌변기 등), 개인위생용품(세면·세발·목욕도구, 구강청결도구 등), 욕창방지용품(파우더, 로션 등)을 10인당 1세트 이상 구비
- 시청각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 구비 필요

3) 직원 배치 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에서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직원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표 2-12>와 같음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기관장 1명, 자격기준을 갖춘 전임 교수요원 및 외래 교수요원을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함

<표 2-12>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직원 배치 기준

구분		수	자격기준
교육기관의 장		1명	없음
교수요원	전임	1명 이상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사람(※ 해당 학과 과목 중 영어 등 교양과목은 제외) ②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작업치료사로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④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서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가)}
	외래	1명 이상	

※ 교수요원은 전임과 외래 교수요원을 합하여 총 3명 이상이어야 함

※ 교과목 또는 교육내용별 교수요원의 자격기준과 업무경력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함
 자료: 법제처(2025c),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

7) '장기요양기관 평가 C등급 이하' 또는 '5년 재직 경력 중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지정 취소, 폐쇄 명령)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을 교수요원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보건복지부, 2025).

4.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현장실습기관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론강의와 실기연습을 이수한 후, 현장실습과정을 거쳐야 하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현장실습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함
 - 실습유형은 시설과 재가 실습으로 구분되며, 실습유형별 실습 연계 가능 기관은 <표 2-13>과 같음
- 현장실습기관은 원칙적으로 교육기관이 설치된 시·도에 소재한 곳과 우선적으로 연계하되, 실습생 거주지 변경, 타 시·도 인접기관 실습 필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타 시·도 소재 기관과도 연계 가능함(보건복지부, 2025)
 - 연계기간은 최대 3년이며, 기간 만료 시 평가등급을 재확인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함
 - 연계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A~C등급을 받은 기관이어야 하며, 평가등급이 우수한 기관을 우선적으로 연계함. 평가등급이 없는 신설기관의 경우, 시·도지사가 적정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연계 가능함
- 현장실습기관 연계 시 노인요양시설(입소)과 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 모두와 각각 연계 계약을 체결해야 함(보건복지부, 2025)
- 재가실습시간은 시·도 판단 하에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에 적절히 안배할 수 있으나, 방문요양 또는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 중 어느 한 서비스 유형에 실습시간 전부를 배분하는 것은 불가함(보건복지부, 2025)
- 실습연계 제한 기관
 - 설치 신고만 하고 개원하지 않거나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
 - 노인복지법령·장기요양보험법령·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위반으로 행정처분(업무정지 이상)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3년간 실습기관 지정·연계 불가
 - 법령 및 지침 위반, 시·도 방침에 따른 연계 제한 기관
 - 실습 중 기관의 대표자·설립주체·법인등록번호 변경 시, 해당 교육 회차의 실습 종료까지는 인정하나 이후 재연계 시 재검토 필요

〈표 2-13〉 실습 연계 가능 기관

실습종류	실습 연계 가능 기관
시설실습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장기요양기관)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따른 소규모요양시설 중 입소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재가실습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법의 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의한 소규모 요양시설 중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법령 및 지침 위반이나 시·도방침에 의해 연계가 제한된 기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소규모 요양 시설은 2006년부터 신규로 법인이 국고 보조를 받아 설치한 시설로서, 입소 보호와 재가보호를 병행하는 시설
 ※ 설치 신고만 하고 개원하지 않거나 실제로 서비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실습 연계 불가

자료: 보건복지부. (2025). 「2025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p.20.

5.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

1) 수강등록

(1) 수강대상 확인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수강생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통하여 본인 확인을 반드시 한 후 등록 처리함
- 교육생으로부터 국가자격·면허증,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각 교육과정의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수강 등록 및 교육을 실시함
 - 국가자격·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교육과정 수강 전에 해당 자격(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함(발급일 이전에 수강한 교육은 인정하지 않음)

(2) 교육과정 수강 안내

- 교육기관은 교육 희망자가 수강등록 전에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이해 부족으로 인한 잘못된 등록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교육수강료는 교재비와 현장 실습비를 포함하며, 해당하는 교육과정 범위에서 수납함(〈표 2-14〉 참고)

〈표 2-14〉 교육 수강료

교육과정		1인당 교육비(※ 40인 기준)
신규		70만원 ~ 100만원
경력자		40만원 ~ 65만원
국가자격(면허) 소지자반		20만원 ~ 25만원
승급과정	경력자	20만원 ~ 35만원
	무경력자	25만원 ~ 45만원

주1: 북한이탈주민 '요양보호사 기초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한 자는 잔여과정을 교육하며 수강료는 경력자반에 준하여 수납.

주2: 교육비 덤핑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수강료 지원 외의 기타 수강료 지원은 사도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며, 교육기관 자체 할인은 불허함.

자료 : 보건복지부(2025). 「2025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p23.

2) 교육과정 운영

- 교육 시간은 1일 최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점심시간 1시간은 교육 가능 1일 최대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생의 교육 참여 확인을 위해 생체 인식 가능한 전자 시스템(지문, 안면 인식)을 통하여 매 교시마다 교육생 본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며 출석부는 2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정리함
- 강의시간은 50분 강의,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하며, 수강생과 교육기관의 사정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3) 현장실습 운영

- 이론 강의와 실기연습을 이수한 교육생은 현장실습을 진행하여야 함. 현장실습 기관의 1회 실습 가능 인원은 다음 〈표 2-15〉와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별도의 실습 가능 인원을 정할 경우, 실습 시설은 그에 따라 실습을 실시하여야 함
- 현장실습은 이론과 실기교육을 마친 후에 실시하여야 하고, 실습은 해당 교육기관과 실습 연계 계약을 체결하여 시·도의 승인을 받은 시설에서만 가능함
- 실습시설은 실습지도자로 하여금 실습생 관리 대장을 작성·관리토록 하여 2년 이상 보관하며, 실습 중에는 반드시 지정된 실습지도자가 상근하여야 함. 만약 부재 시 해당 시설에 대한 실습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실습 가능 인원은 아래 <표 2-6>과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광역시·도에서 자체적으로 별도의 실습 가능 인원을 정한 경우에는 실습시설은 그에 따라 실습을 실시하여야 함
- 1회 실습 가능 인원 이내라도 실습지도자가 지도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해서 실습생을 받을 수는 없음
- 실습 가능 시간은 입소 어르신의 수면시간, 종사자의 근무 형편 등 시설의 여건을 감안하여 실습시설과 교육기관 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다만, 광역시·도에서 시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별도의 실습 가능 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실습시설은 그에 따라 실습을 실시하여야 함
- 실습 평가는 실습 지도자가 교육생이 표준 실습교재의 내용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반복 지도하고, 실습시설의 장은 실습지도자로 하여금 표준 실습교재의 충분한 숙지 후 교육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표 2-15> 요양보호사 실습 가능 인원

구분	1회 실습가능인원	실습지도자 1인당 실습가능인원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현원의 1/3 범위 내	5인 이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현원의 1/3 범위 내	3인 이내
주·야간보호	이용자 현원 범위 내	5인 이내
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자 현원 범위 내	3인 이내

자료: 보건복지부. (2025). 「2025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p.27.

4) 교육과정 수료

- 교육생은 이론강의, 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을 각각 80% 이상 출석하고,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적합한 때에 교육과정 수료를 인정받게 됨
- 결석 시 ‘결석사유서’ 제출이 필요하고, 이론, 실기, 실습 각각의 교육시간이 8할 미만인 경우 수료는 불가함
 - 또한 8할 이상 이수하였으나 모든 교육생이 일률적으로 교육 시간의 8할 이상만 이수한 경우 정상 수료로 인정하지 않음
 - 즉, 8할을 초과하더라도 교육생의 상당 부분이 교육시간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10할 미만으로 이수한 경우, 교육과정을 단축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는 현장 실습기관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출석으로 인정 가능하며, 이 경우 수강생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기관장은 해당 자료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함(〈표 2-16〉 참고)

〈표 2-16〉 출석 인정 일수

구분	사유	출석 인정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사망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출산	배우자	5일

자료: 보건복지부(2025). 「2025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p.29.

6.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 변경 및 지정 취소

1) 교육기관 변경 지정 신청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 중 당초 지정받은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지정서를 첨부하여 즉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함

○ 변경 신청 대상 항목은 아래와 같음

- 교육기관 명칭
- 교육기관 소재지(지정받은 시·도에 한함)
- 시설 현황
- 교육기관의 장(임명 교육기관의 장에 한함)
- 법인 대표자

※ 신규 지정 신청: 교육기관의 실질적인 소유주(대표자)가 변경되거나, 소재지의 시·도 간 변경의 경우 기존 교육기관은 폐지 신고를 하고 신규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함

2) 교육기관 휴지·폐지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휴지·폐지 신고서와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는 아래와 같음

- 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 의결서(법인만 해당) 1부
-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서

3) 교육기관 지정 취소

○ 광역시·도지사는 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도록 정기점검(연 1회 이상)과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지도·감독해야 함(보건복지부, 2025)

- 점검 시에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며, 필요할 경우 국시원과 협력해 수강생 관리 실태를 합동으로 점검함

- 법규 위반이나 부당 운영이 적발된 기관, 또는 위반 가능성이 높은 기관은 지속적으로 관리함
- 실습시설 점검은 필요시 관할 시·군·구청과 협조해 적정성을 확인함
- 「노인복지법」 제39조의3는 시·도지사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해 사업정지 또는 지정 취소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법제처, 2023)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지정받은 경우
 -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교육기관 설치·운영자가 교육 이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지정 취소 시에는 청문 절차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행정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음(법제처, 2023)

7. 인천광역시 자체 지정 기준⁸⁾

-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요양보호사 양성자 지침 외 인천광역시는 별도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 수립 계획(안)’을 마련하여 교육기관 간 과잉경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자 자체 지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교육기관 신규 지정 시 정기적인 요양보호사 수요 추계로 공급을 조절하고 요양보호사 공급량 및 자치구별 또는 권역별 요양보호사 인력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추진 방침을 마련해 둠
- 인천광역시에서 제시하는 자체 지정기준의 세부 내용은 <표 2-17>과 같음

8) 인천광역시. (2020). 여성가족국 노인정책과 내부자료 「인천광역시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 수립 계획(안)」.

〈표 2-17〉 인천광역시 자체 지정 기준

구분	내용
일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인구 수 등급판정자 수 등을 검토하여 지역별 정수 책정 사고 대비 상해보험 등에 가입 교육기관 타 군·구 이동 금지(소재지 변경 제한) : 교육기관 지역별 총량 관리를 통한 과대 경쟁 발생 금지
시설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층 및 반지하층 지정 불가(수강생 연령층을 고려 채광 및 환기 확보 어려움) 동일 지역 내 신규 개소 시 기존 교육기관과 1km 이상 거리 제한 화장실 및 급수시설 구비, 채광, 환기, 냉난방 시설 등 보건위생상 적절한 학습 환경 확보 휴게실 의무 설치: 교육생의 주 연령층이 40~50대 여성으로, 하루 최대 8시간 이상 교육 진행 시 휴게실 확보 필요 대중교통 등 교육기관 접근성 용이

-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자체 지정 기준에 따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신규 지정 시 신청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공고 및 추첨을 통해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함
- 다음은 실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선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각 군·구별 노인 인구수와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수 그리고 설치 운영 중인 교육기관 수를 고려하여 정수 책정 기준을 살핌
 - 등급 판정자 수를 기준으로 교육기관 수 산정
 - 노인인구 수로 보완(향후 등급 판정자 전환 가능성)
 - 등급판정자 수: 가중치 70% 부여
 - 노인인구 수: 가중치 30% 부여
 - 산출방식 : [등급판정자수/1,500명×0.7] + [노인인구수/15,000명×0.3], 소수점 이하 반올림

예시) 부평구

$$\begin{aligned}
 \text{산출식} &= (7,419/1,500) \times 0.7 + (70,975/15,000) \times 0.3 \\
 &= 4.88 \quad [\text{소수점 이하 반올림}] \\
 &= 5 \quad [\text{적정 교육기관 수}]
 \end{aligned}$$

○ 인천광역시 군·구별 교육기관 정수(2020년 기준)는 <표 2-18>에 제시함

<표 2-18> 인천광역시 군·구별 교육기관 정수(2020년 기준)

(단위: 명, 개)

구분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노인 인구수	22,251	5,231	19,586	13,981	66,955	35,505	68,309	70,975	36,044	55,164
등급 판정자수	2,426	228	1,969	1,255	7,385	3,482	8,501	7,419	4,497	6,768
교육원 수	1	0	2	1	3	1	6	5	3	3
정수	2	0	1	1	5	2	5	5	3	4
과부족 (과:+ / 부족:-)	-1	0	+1	0	-2	-1	+1	0	0	-1

주: 정수보다 적은 강화군은 지역 특성상 수강생 모집의 어려움으로 추가 지정 불가(2012년 교육기관 폐지, 2017년 강화군청 요청으로 재지정 후 연 2회 수업 중).

제4절 선행연구 검토

1. 인천광역시 선행연구 사례⁹⁾

1) 수요추계

- 203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자는 약 108,879명으로 추정되며, 요양보호사는 83,216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기준 인천광역시의 요양보호사 수는 29,926명이며, 2021년에는 약 32,293명이 활동할 것으로 예상됨
- 인천광역시 소재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2021년 기준 총 25개소이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6.438명의 요양보호사 합격자를 배출함. 향후 약 8,000명의 요양보호사 공급이 예상됨
- 2021년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각 군·구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규 지정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10개 군·구 중 중구 지역은 추가 검토가 요구되며, 강화군과 옹진군은 신규 교육기관 설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 그러나 향후 요양보호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신규로 지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전제로 함
 - 다만, 중구 지역의 경우 2021년 기준 약 70~80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근거로 신규 교육기관 지정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영종도를 포함한 중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육기관 신규 지정을 검토해 볼 수 있음을 언급함
 - 강화군과 옹진군의 경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신규 지정이 필요하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제약이 예상됨에 따라 신규 교육기관 설립보다는 다른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함
- 인천광역시 및 군·구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추계 시 적용된 산식은 다음 <표 2-19>와 <표 2-20>과 같음

9) 하석철, 김제희(2021). 인천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적정규모 추계 연구. 인천사회서비스원·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표 2-19〉 인천광역시 요양교육기관 추계 산식

당해 연도 노인급여이용자 수 (A)	= 당해 연도 노인인구(추계) × (전년도 전체 노인인구 대비 노인 인정자 비율 + 0.0059) × 노인 장기요양인정자 대비 노인급여이용자 값 (0.8671)
당해 연도 비노인급여이용자 수 (B)	= (A / 0.9403) - A
당해 연도 노인재가급여이용자 (C)	= A × (전년도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이용률 + α)
당해 연도 노인시설급여이용자 (D)	= A - C
노인 추정 필요 요양보호사 (E)	= (C / 1.2) + (D / 2.5) 단, 2022년부터는 시설급여이용자 2명당 요양보호사 1명 반영
비노인 추정 필요 요양보호사 (F)	= (B × 0.7218 / 1.2) + (B × 0.2782 / 2.5) 단, 2022년부터는 시설급여이용자 2명당 요양보호사 1명 반영
총 필요 요양보호사 (G)	= E + F
추정 근로(현업) 요양보호사(H)	= 전체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전년도 근로(현업) 요양보호사 비율 (전년도 전체 자격증 소지자 대비 전년도 요양보호사 수)
G > H	= 요양보호사 신규 증원 필요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규 지정 허용
G < H	= 요양보호사 신규 증원 불필요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규 지정 제한
α : 노인 재가급여 이용률 증가분(평균)	

〈표 2-20〉 인천광역시 군·구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추계 산식

당해 연도 노인급여이용자 수 (A)	= 당해 연도 노인인구(추계) × (전년도 전체 노인인구 대비 노인 인정자 비율 + α) × β
당해 연도 비노인급여이용자 수 (B)	= (A / γ) - A
당해 연도 노인재가급여이용자 (C)	= A × (전년도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이용률 + δ) 단, 2023년부터 δ 값은 0.0120 적용
당해 연도 노인시설급여이용자 (D)	= A - C
노인 추정 필요 요양보호사 (E)	= (C / 1.2) + (D / 2.5) 단, 2022년부터는 시설급여이용자 2명당 요양보호사 1명 반영
비노인 추정 필요 요양보호사 (F)	= (B × ϵ / 1.2) + (B × ζ / 2.5) 단, 2022년부터는 시설급여이용자 2명당 요양보호사 1명 반영
총 필요 요양보호사 (G)	= E + F
추정 근로(현업) 요양보호사 (H)	= 전체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근로(현업) 요양보호사 비율 (전년도 전체 자격증 소지자 대비 전년도 요양보호사 수)
G > H	= 요양보호사 신규 증원 필요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규 지정 허용
G < H	= 요양보호사 신규 증원 불필요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규 지정 제한
<p>α: 노인 장기요양인정률 증가분(평균) β: 노인 장기요양인정자 대비 노인급여이용자 값 γ: 전체 급여이용자 중 노인 급여이용자 비율(평균) δ: 노인 재가급여 이용률 증가분(평균) ϵ: 비노인 재가급여 이용률(평균) ζ: 비노인 시설급여 이용률(평균)</p>	

2)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 「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통한 유휴 요양보호사의 현장 복귀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함
 - 기존 요양보호사 자격 보유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력단절 등으로 현장을 이탈한 유휴 인력이 다시 장기요양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함
- 강화군과 옹진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종합재가센터」의 확충과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함
 - 해당 지역은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요양보호사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남
 - 이에 대한 대안으로 농·어촌 지역의 장기요양급여 급여 수가를 일부 인상하거나 이동에 필요한 비용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함
 - 또한, 지역 내 유휴 요양보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종합재가센터」의 확대가 필요함을 제시함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양질의 교육이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 함을 제언함
 - 교육기관 신규 지정이 제한될 경우, 장기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교육기관이 지속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소관 부서의 관리 인력을 확충하고, 지도·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함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인증제 도입을 통해 교육기관 간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함
 - 인증제는 교육 소비자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한편, 교육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초기 인증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갱신 절차를 마련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제언함

2. 서울특별시 선행연구 사례¹⁰⁾

1) 수요추계

○ 기능상태 제한 경험 노인 추계

- 2017년 기준 서울특별시 65세 이상 노인의 기능상태 제한 경험률은 10.5%로 분석됨
- 2017년 기준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제한이 있는 노인은 전체 노인 중 9.3%, 2020년에는 9.6%, 2030년에는 10.4%, 230,010명으로 예측함

○ 65세 이상 장기요양 인정자 추계

- 2019년 전체 노인의 6.9%인 96,808명, 2030년에는 전체 노인의 10.2%인 225,664명으로 분석됨

○ 요양보호사 수요 추계

- 2019년까지 2017년 기준 서울특별시 요양보호사 63,429명의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나, 2020년부터는 현재 규모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함

○ 서울특별시는 매년 약 1만 5천 명의 요양보호사 자격 보유자가 배출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누적 인원은 약 14만 명에 달함

○ 이에 따라 교육기관을 양적으로 확대하거나 적극적인 인력 배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움

- 2~3년 주기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요양보호사 적정 인원을 산출하고 실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수를 고려해 요양보호사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될 때 신규 교육기관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교육기관 간 거리제한 기준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자치구 또는 권역별 요양보호사의 총량을 관리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함

○ 서울특별시 요양보호사 추계 시 적용된 산식은 다음 <표 2-21>과 같음

10) 윤민석·문진영(2019).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운영 쟁점과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표 2-21〉 서울특별시 요양보호사 추계 산식

당해 연도 급여 이용자 수 (A)	= 노인인구수(추계)×(전년도 전체 노인인구 대비 노인인정자 비율 + 0.3%) ×전년도 인정자 대비 급여 이용자 비율
시설급여 이용자 (B)	= A×전년도 급여이용자 중 시설이용률
재가급여 이용자 (C)	= A-B
필요 요양보호사 수 (D)	= (B)/2(법정인력 배치 기준: 요양보호사 1명당 노인 2인) + (C)/1.2(법정인력 배치 기준: 요양보호사 1명당 노인 1.2인)
현업 요양보호사 수 (E)	= 전체 자격증 조지자×현업종자 비율(전체 자격증 조지자 대비 전년도 요양보호사 수)
D < E	= 요양보호사 교육 인원 증원 불필요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규 지정 제한
D > E	= 요양보호사 교육 인원 증원 필요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규 지정 허용

2)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리·감독 개선방안

- 현실에 맞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제도 개선 건의 평가체계 도입을 통한 교육수준의 질 향상
 - 교육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체계 도입 필요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평가 수행을 위한 별도의 운영주체 검토
 - 교육기관의 질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 기준 마련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과 관리 감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주체 검토
 - 사회서비스원 업무대행 또는 위탁
 - 자치구 이관
 - 서울시 교육청 이관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 개선방안
 - 교육기관의 연중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운영지침 수정
 - 서울시 장기요양 관련 돌봄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3. 대전광역시 선행연구 사례¹¹⁾

- 대전광역시는 두 차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로 수행된 연구는 장창수와 최미영(2017)의 연구이고, 그 다음으로 진행된 연구는 김지영, 장창수, 최미영, 그리고 성민현(2020)의 연구임

1) 수요추계

□ 2017년 수요추계

- 공급 측면에서 교육기관 수를 살펴보면, 2008년 37개소에서 2010년 44개소로 증가하였다가 '지정제'의 전환 및 자격시험제도 도입의 영향으로 교육생이 대폭 감소하여 2015년 22개소로 감소함
- 향후 교육기관 수는 2020년 20개소, 2025년 18개소, 2030년 17개소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요양보호사 배출 현황은 2015년 3,159명에서 해마다 감소하여, 2025년 2,600명, 2030년 2,5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함
- 한편, 수요 측면(노인인구 및 장기요양 인정자)에서 2015년 대전시의 노인인구는 165,000명, 장기요양 인정자 수는 13,692명에서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11) 장창수, 최미영(2017). 대전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적정규모 수요 추계에 관한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김지영, 장창수, 최미영, 성민현(2020). 대전광역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 및 수요분석 연구. 대전복지재단.

- 요양보호사 근무 현황 측면에서도 2008년 4,224명에서 2015년 11,648명과 2020년 17,426명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함
- 수요 대 공급 비율을 보면, 2008년 1:4에서 2015년 1:6으로 과잉 배출되었고, 2025년 1:3, 2030년 1:2.3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2020년 수요추계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별 배출현황을 근거로 5개년 요양보호사 양성 인원을 추정한 결과, 2017년 이후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보수교육 및 직무교육의 확대 실시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 2020년 기준 약 5,000명을 20개 기관으로 나누었을 때 1개 기관 당 약 250에 이르며, 보수교육 및 직무교육의 확대 실시 등을 감안한다면 향후 신규 설치는 다소 완화할 수 있는 상태로 봄

2)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 2017년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 교육기관 수요와 공급 관리
 - 요양보호사의 수요와 공급은 유동적이므로 교육기관 신규 설치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과 직무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며, 건강보험 수가 인상과 근무환경 개선은 요양보호사 직업에 대한 선호도를 높여 교육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교육기관 관리 및 질적 향상
 - 교육기관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도와 감독이 강화되어야 함
 - 교육기관별 적정 교육생 수를 조정하고, 점검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해야 함

○ 보건복지부의 제도 개선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설치 기준 강화, 질 평가 및 인증 제도 도입을 통해 양질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인증된 기관에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해야 함

○ 현장실습 강화와 자격 기준 강화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현장실습을 강화하고, 정부는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자격 기준을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적정 수준 확대 및 관리

- 2025년까지 약 2개소 정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기존 교육기관의 폐원이 있을 시 적정 수를 정하여 신규 설치를 완화할 수 있음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공공성 확보 및 지역별 균형 배치 검토

- 향후 신규 지정 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우선하여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노인인구, 인정자 수, 요양보호사 수요 현황을 분석하여 교육기관 수를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다만 구별 분포도에서 상대적으로 교육기관 수가 적은 구에 우선 지정하는 지역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요양보호사 인성교육 강화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에 심리검사와 함께 노인에 대한 이해, 인간 존중의 정신과 배려, 예절과 공감의 가치, 감성능력 향상을 위한 인성교육 강화가 필요함

○ 현장 중심의 학습교구 및 교육과정 추가

- 정보화 사회에서 복지현장에 진출하면 전자시스템 활용이 필수적이므로, 스마트폰 이용 교구를 통한 전자시스템 활용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통해 현장 적응력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에서 언급함

○ 수강료 현실화 검토

- 2008년부터 변동 없이 책정된 수강료가 적용되고 있는데, 교육기관은 수강생 모집을 위해 과도한 경쟁을 함으로써 교육기관은 실력 있는 강사진과 수준 높은 교육과정 등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 교육생 부담으로 지급하는 실습비를 수강료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다만, 많은 교육 수강생이 서민층인 점을 감안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의 국비 지원 과정을 확대하는 방안 모색이 요구됨

3

인천시 장기요양 수요 및 공급 현황

제1절 인천시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제2절 인천시 장기요양 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제3절 인천시 장기요양급여 이용 현황

제4절 인천시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 현황

제3장 인천시 장기요양 수요 및 공급 현황

제1절 인천시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1. 의료보장 적용인구

- 2014년과 2024년의 인천시 의료보장 적용인구를 살펴보면 <표 3-1>과 같음
- 인천시의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증가는 전체 인구 대비 뚜렷한 비율 변화를 나타냄
- 2014년 전체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약 292만 명으로, 이 중 남성 약 147만 명(50.3%), 여성 약 145만 명(49.7%)으로 구성됨
- 2024년에는 전체 인구가 약 313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남성 약 157만 명(50.2%), 여성 약 156만 명(49.8%)임
- 2014년 대비 2024년 전체 적용인구는 약 7.1% 증가하였으며, 성별로는 남성 6.6%, 여성 7.7% 증가함
- 2014년 노인인구는 약 30만 명(10.1%)이며, 남성은 약 12만 명, 여성은 약 17만 명임
- 2024년 노인인구는 약 54만 명(17.4%)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남성은 약 24만 명, 여성 약 30만 명임
- 전체 노인인구는 2014년 대비 약 83.6% 증가하였으며, 성별로는 남성 약 95.3%, 여성 약 75.1% 증가함
- 이러한 통계는 인천시가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음을 방증하며, 향후 노인 대상 의료서비스 수요 확대 및 이에 따른 재정 및 인프라 확보의 필요성을 시사함

〈표 3-1〉 연도 및 성별 의료보장 적용인구

(단위 : 명, %)

구분	2014		2024		증가율	
	전체	65세 이상	전체	65세 이상	전체	65세 이상
계	2,924,351	296,039(10.1)	3,132,677	543,530(17.4)	7.1	83.6
남성	1,472,331	124,499(8.5)	1,569,007	243,103(15.5)	6.6	95.3
여성	1,452,020	171,540(11.8)	1,563,670	300,427(19.2)	7.7	75.1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계 및 각 성별)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임.
 자료: 통계청(2025d).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 군·구별 의료보장 적용인구

- 2014년과 2024년 인천시 10개 군·구별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은 〈표 3-2〉와 같음
- 2014년에는 부평구가 약 55만 8천 명으로 가장 많은 의료보장 적용인구를 보였으며, 이중 노인 인구 비율은 강화군(27.7%)이 가장 높고 옹진군(20.8%)이 그 뒤를 이음
- 2024년에는 서구의 적용인구가 약 65만 8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노인 인구 비율은 2014년과 동일하게 강화군(38.4%)과 옹진군(32.9%)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함
- 2014년 대비 2024년 적용인구 증가율을 보면 중구는 52.6%로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동구는 -18.7%로 가장 큰 감소를 기록함
- 같은 기간 의료보장 적용 노인인구는 서구가 125.3% 증가하여 약 2.3배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연수구 역시 118.6% 증가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표 3-2〉 군·구별 의료보장 적용인구

(단위: 명, %)

구분	2014		2024		증가율		
	전체	65세 이상	전체	65세 이상	전체	65세 이상	
소계	계	2,924,351	296,039(10.1)	3,132,677	543,530(17.4)	7.1	83.6
	남성	1,472,331	124,499(8.5)	1,569,007	243,103(15.5)	6.6	95.3
	여성	1,452,020	171,540(11.8)	1,563,670	300,427(19.2)	7.7	75.1
강화군	계	67,149	18,632(27.7)	70,925	27,201(38.4)	5.6	46.0
	남성	33,688	8,202(24.3)	35,670	12,576(35.3)	5.9	53.3
	여성	33,461	10,430(31.2)	35,255	14,625(41.5)	5.4	40.2
옹진군	계	20,686	4,293(20.8)	20,579	6,777(32.9)	-0.5	57.9
	남성	11,547	1,825(15.8)	11,846	3,283(27.7)	2.6	79.9
	여성	9,139	2,468(27.0)	8,733	3,494(40.0)	-4.4	41.6
중구	계	113,568	14,612(12.9)	173,297	27,331(15.8)	52.6	87.0
	남성	58,629	6,327(10.8)	89,549	12,388(13.8)	52.7	95.8
	여성	54,939	8,285(15.1)	83,748	14,943(17.8)	52.4	80.4
동구	계	73,621	11,828(16.1)	59,877	15,976(26.7)	-18.7	35.1
	남성	37,175	4,902(13.2)	30,024	6,854(22.8)	-19.2	39.8
	여성	36,446	6,926(19.0)	29,853	9,122(30.6)	-18.1	31.7
미추홀구	계	408,930	52,699(12.9)	425,728	85,725(20.1)	4.1	62.7
	남성	206,222	22,666(11.0)	213,773	37,418(17.5)	3.7	65.1
	여성	202,708	30,033(14.8)	211,955	48,307(22.8)	4.6	60.8
연수구	계	311,603	24,357(7.8)	421,653	53,253(12.6)	35.3	118.6
	남성	155,565	9,857(6.3)	209,190	24,582(11.8)	34.5	149.4
	여성	156,038	14,500(9.3)	212,463	28,671(13.5)	36.2	97.7
남동구	계	524,321	47,753(9.1)	506,002	93,193(18.4)	-3.5	95.2
	남성	263,891	20,019(7.6)	252,580	40,919(16.2)	-4.3	104.4
	여성	260,430	27,734(10.6)	253,422	52,274(20.6)	-2.7	88.5
부평구	계	558,130	56,120(10.1)	511,218	95,958(18.8)	-8.4	71.0
	남성	277,889	23,424(8.4)	250,598	41,918(16.7)	-9.8	79.0
	여성	280,241	32,696(11.7)	260,620	54,040(20.7)	-7.0	65.3
계양구	계	339,860	27,375(8.1)	285,223	51,681(18.1)	-16.1	88.8
	남성	169,952	11,177(6.6)	141,551	23,546(16.6)	-16.7	110.7
	여성	169,908	16,198(9.5)	143,672	28,135(19.6)	-15.4	73.7
서구	계	506,483	38,370(7.6)	658,175	86,435(13.1)	30.0	125.3
	남성	257,773	16,100(6.2)	334,226	39,619(11.9)	29.7	146.1
	여성	248,710	22,270(9.0)	323,949	46,816(14.5)	30.3	110.2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계 및 각 성별)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임.

자료: 통계청(2025d),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제2절 인천시 장기요양 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1. 연령 및 성별 장기요양 신청자

- 인천시의 장기요양 신청자 수는 지난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층의 신청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남
- 2014년 장기요양 신청자 수는 약 3만 7천 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노인 신청자는 34,094명으로 전체의 약 92.8%를 차지함
- 2024년 장기요양 신청자 수는 약 7만 8천 명으로, 노인 신청자는 73,641명으로 전체의 약 94.7%에 해당함
- 10년간 전체 신청자 수는 약 111.5% 증가했으며, 노인 신청자 수는 116.0% 증가하여 전체 증가율을 상회함
- 2014년 전체 신청자 중 남성은 약 1만 명, 여성은 약 2만 7천 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2024년에는 남성 약 2만 4천 명, 여성 약 5만 3천 명으로 여전히 여성 신청자가 많은 가운데, 남성 신청자의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남
- 노인 신청자 중 남성 증가율은 약 159.3%, 여성은 101.8%로, 남성 노인의 장기요양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인천시의 장기요양 신청자 수는 지난 10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고령화에 따른 요양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노인 신청자의 증가 추세는 요양인력 및 재정 확보,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함

〈표 3-3〉 연령 및 성별 장기요양 신청자

(단위 : 명, %)

구분	2014			2024			증가율		
	전체	64세 미만	65세 이상	전체	65세 미만	65세 이상	전체	65세 미만	65세 이상
계	36,756	2,662	34,094	77,748	4,107	73,641	111.5	54.3	116.0
백분율	100.0	7.2	92.8	100.0	5.3	94.7	0.0	-26.4	2.0
남성	10,001	1,568	8,433	24,295	2,426	21,869	142.9	54.7	159.3
백분율	100.0	15.7	84.3	100.0	10.0	90.0	0.0	-36.3	6.8
여성	26,755	1,094	25,661	53,453	1,681	51,772	99.8	53.7	101.8
백분율	100.0	4.1	95.9	100.0	3.1	96.9	0.0	-24.4	1.0

자료: 통계청(2025d),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2. 자격별 장기요양 신청자

- 인천시의 장기요양 신청자 수는 지난 10년간 자격유형별로 고르게 증가했으며, 특히 ‘감경’ 자격군의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장기요양 신청자 중 일반 자격자는 약 2만 5천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약 8천 명, 감경대상자 약 4천 명, 의료급여대상자 약 4백 명 순으로 나타남
- 2024년에도 일반이 약 3만 3천 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감경대상자가 약 2만 7천 명으로 크게 증가하여 그 뒤를 이음
 - 이어서 기초수급자는 약 1만 8천 명, 의료급여는 약 6백 명 수준으로 확인됨
- 2014년 65세 이상 노인 신청자 중 자격별 분포는 일반(약 2만 3천 명), 기초수급(약 7천 명), 감경(약 4천 명), 의료급여(약 4백 명) 순으로 구성됨
- 2024년에도 동일한 순위 구조가 유지되었으며, 일반(약 3만 1천 명), 감경(약 2만 6천 명), 기초수급(약 1만 6천 명), 의료급여(약 6백 명) 순으로 나타남
- 특히 노인 신청자 중 감경 자격 신청자는 2014년 대비 545.7%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기초수급자의 증가율도 141.8%로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급여자와 일반 자격자는 각각 74.7%, 35.8% 증가함

〈표 3-4〉 자격별 장기요양 신청자

(단위 : 명, %)

구분	2014			2024			증가율		
	전체	65세 미만	65세 이상	전체	65세 미만	65세 이상	전체	65세 미만	65세 이상
계	36,756	2,662	34,094	77,748	4,107	73,641	111.5	54.3	116
백분율	100.0	7.2	92.8	100.0	5.3	94.7	0.0	-26.4	2.0
일반	24,566	1,375	23,191	32,717	1,232	31,485	33.2	-10.4	35.8
백분율	100.0	5.6	94.4	100.0	3.8	96.2	0.0	-32.1	1.9
감경	4,310	340	3,970	26,537	902	25,635	515.7	165.3	545.7
백분율	100.0	7.9	92.1	100.0	3.4	96.6	0.0	-57.0	4.9
의료급여	377	18	359	645	18	627	71.1	0.0	74.7
백분율	100.0	4.8	95.2	100.0	2.8	97.2	0.0	-41.7	2.1
기초수급	7,503	929	6,574	17,849	1,955	15,894	137.9	110.4	141.8
백분율	100.0	12.4	87.6	100.0	11.0	89.0	0.0	-11.3	1.6

자료: 통계청(2025e),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3. 연령별 장기요양 판정자 및 인정자

- 전체 장기요양 판정자 중 4등급 수급자가 약 3만 명(42.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3등급 수급자가 약 1만 9천 명(27.0%)으로 뒤를 이음
- 이외에도 1등급, 2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이 있으나, 4등급과 3등급 수급자가 전체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며 중경증 수준의 요양 필요 대상자 중심으로 판정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65세 미만 비노인층에서는 4등급이 약 1천 명(29.4%)으로 가장 많고, 3등급이 924명(26.4%)으로 그 뒤를 이음

- 비노인층 내에서도 중증보다는 중경증 수준의 요양 필요자 중심의 판정 결과가 도출됨
- 65세 이상 노인층 역시 4등급이 약 2만 9천 명(43.0%)으로 가장 많고, 3등급이 약 1만 8천 명(27.0%)으로 두 번째로 많음
- 전체 판정자 중 1·2등급의 고위험군보다 3·4등급 중심의 중경증요양서비스 수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의 강화 필요성과도 연결됨

〈표 3-5〉 연령별 장기요양 판정자 및 인정자

(단위 : 명, %)

구분	2024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사지원등급	등급외
계	69,908	3,084	5,938	18,875	29,590	4,932	910	6,579
백분율	100.0	4.4	8.5	27.0	42.3	7.1	1.3	9.4
65세 미만	3,503	316	296	924	1,029	194	37	707
백분율	100.0	9.0	8.4	26.4	29.4	5.5	1.1	20.2
65세 이상	66,405	2,768	5,642	17,951	28,561	4,738	873	5,872
백분율	100.0	4.2	8.5	27.0	43.0	7.1	1.3	8.8

자료: 통계청(2025f),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4. 성별 장기요양 판정자 및 인정자

- 2024년 성별 장기요양 판정자 및 인정자 현황은 〈표 3-6〉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남성의 경우 4등급 수급자가 약 1천 명(29.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3등급 수급자 924명(26.4%)으로 나타남
- 여성은 4등급 수급자가 약 2만 9천 명(43.0%)으로 가장 많았고, 3등급 수급자가 약 1만 8천 명(27.0%)으로 뒤를 이음

- 성별에 관계없이 4등급 및 3등급 수급자가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중등도 요양 필요군의 수요가 상당함을 보여줌
- 특히 여성의 경우 전체 수급자 수가 절대적으로 많고, 4등급 비중이 남성에 비해 더욱 높게 나타나 중증보다는 중경증 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함
- 이러한 등급별 분포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설계 및 자원 배분 시 중경증 수급자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예: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의 확대와 다양화가 필요함을 보여줌

〈표 3-6〉 성별 장기요양 판정자 및 인정자

(단위 : 명, %)

구분	2024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자자원등급	등급외
계	69,908	3,084	5,938	18,875	29,590	4,932	910	6,579
백분율	100.0	4.4	8.5	27.0	42.3	7.1	1.3	9.4
남성	3,503	316	296	924	1,029	194	37	707
백분율	100.0	9.0	8.4	26.4	29.4	5.5	1.1	20.2
여성	66,405	2,768	5,642	17,951	28,561	4,738	873	5,872
백분율	100.0	4.2	8.5	27.0	43.0	7.1	1.3	8.8

자료: 통계청(2025f).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5. 자격별 장기요양 판정자 및 인정자

- 자격별 장기요양 판정자 및 인정자 현황은 〈표 3-7〉과 같음
- 일반 자격자의 경우 4등급이 약 1만 1천 명으로 전체의 38.7%를 차지하였고, 3등급은 약 7천 명으로 24.9%를 차지함
- 감경 자격자에서는 4등급이 약 1만 2천 명(44.9%)으로 가장 많았고, 3등급이 약 8천 명(31.0%)으로 뒤를 이음

- 의료급여 수급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역시 4등급(의료급여: 44.3%, 기초수급: 44.2%)과 3등급(의료급여: 29.3%, 기초수급: 24.0%)이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자격유형 전반에서 4등급과 3등급 수급자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양상은 중경증 수준의 요양 필요도가 자격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높다는 점을 보여줌
- 특히 감경 및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집단에서 4등급 비율이 40%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은 경제적 취약계층일수록 중증보다는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중경증 대상자의 수요가 크다는 점을 시사함

〈표 3-7〉 자격별 장기요양 판정자 및 인정자

(단위: 명, %)

구분	2024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원등급	등급외
계	69,908	3,084	5,938	18,875	29,590	4,932	910	6,579
백분율	100.0	4.4	8.5	27.0	42.3	7.1	1.3	9.4
일반	27,241	1,108	2,073	6,795	10,555	1,981	411	4,318
백분율	100	4.1	7.6	24.9	38.7	7.3	1.5	15.9
감경	25,745	1,222	2,534	7,985	11,563	1,846	324	271
백분율	100.0	4.7	9.8	31.0	44.9	7.2	1.3	1.1
의료급여	576	28	53	169	255	28	-	43
백분율	100.0	4.9	9.2	29.3	44.3	4.9	0.0	7.5
기초수급	16,346	726	1,278	3,926	7,217	1,077	175	1,947
백분율	100.0	4.4	7.8	24.0	44.2	6.6	1.1	11.9

자료: 통계청(2025e),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6. 장기요양 판정 등급별 특성

- 장기요양 판정 등급별 특성은 〈표 3-8〉을 통해 재정리할 수 있음
- 등급별,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모든 등급에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 집단이 모든 등급에서 65세 미만 집단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며, 이는 장기요양 수요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함
- 자격별 현황에서는 일반 자격자와 감경 자격자가 대부분의 등급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에서는 일반(65.6%)과 기초생활수급자(29.6%)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이러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여성 및 고령자의 장기요양 수요가 높고, 자격유형별로도 등급외 판정 시 경제적 취약계층의 비중이 두드러짐을 시사함

〈표 3-8〉 판정 등급별 특성

(단위 : 명, %)

구분	2024								
	계	성별		연령별		자격별			
		남성	여성	65세 미만	65세 이상	일반	감경	의료급여	기초수급
계	69,908	21,523	48,385	3,503	66,405	27,241	25,745	576	16,346
백분율	100	30.8	69.2	5.0	95.0	39.0	36.8	0.8	23.4
1등급	3,084	797	2,287	316	2,768	1,108	1,222	28	726
백분율	100	25.8	74.2	10.2	89.8	35.9	39.6	0.9	23.5
2등급	5,938	1,561	4,377	296	5,642	2,073	2,534	53	1,278
백분율	100	26.3	73.7	5.0	95.0	34.9	42.7	0.9	21.5
3등급	18,875	5,419	13,456	924	17,951	6,795	7,985	169	3,926
백분율	100	28.7	71.3	4.9	95.1	36.0	42.3	0.9	20.8
4등급	29,590	9,257	20,333	1,029	28,561	10,555	11,563	255	7,217
백분율	100	31.3	68.7	3.5	96.5	35.7	39.1	0.9	24.4
5등급	4,932	1,654	3,278	194	4,738	1,981	1,846	28	1,077
백분율	100	33.5	66.5	3.9	96.1	40.2	37.4	0.6	21.8
인지지원 등급	910	329	581	37	873	411	324	0.0	175
백분율	100	36.2	63.8	4.1	95.9	45.2	35.6	0.0	19.2
등급외	6,579	2,506	4,073	707	5,872	4,318	271	43	1,947
백분율	100	38.1	61.9	10.7	89.3	65.6	4.1	0.7	29.6

자료: 통계청(2025e),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제3절 인천시 장기요양급여 이용 현황

1. 장기요양 등급별 급여이용수급자

- 장기요양 등급별 급여이용수급자 수는 <표 3-9>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2021년 총 급여이용수급자는 약 5만 명이며, 등급별로는 4등급이 약 2만 5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3등급은 약 1만 7천 명으로 뒤를 이음
- 2024년에는 총 수급자가 약 6만 4천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4등급 수급자가 약 3만 2천 명으로 가장 많고, 3등급이 약 2만 2천 명으로 그 뒤를 이음
- 2021년 대비 2024년 전체 급여이용수급자 수는 10.9% 증가함
- 등급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1등급 수급자가 2021년 2,502명에서 2024년 3,464명으로 18.2%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이와 같은 등급별 변화 양상은 전반적인 수급자 수 증가 추세 속에서도 중경증군(3·4등급)의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보여주며, 동시에 고위험군(1등급) 대상자의 증가폭이 가장 큰 점은 향후 중증 수급자에 대한 집중적 관리와 자원 투입의 필요성을 시사함

<표 3-9> 등급별 급여이용수급자

(단위: 명, %)

구분	2021(A)	2024(B)	증감률(A 대비 B)
계	49,871	64,290	10.9
1등급	2,502	3,464	18.2
2등급	5,831	7,403	14.1
3등급	16,683	21,614	11.5
4등급	24,782	32,262	13.3
5등급	4,154	5,522	11.1
인지지원	413	518	4.6

주: 계의 급여이용수급자는 집계 기간 내 지역별, 급여종류별, 인정등급별 중복을 배제한 수.
 자료: 통계청(2025g).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 장기요양 급여종류별 급여이용수급자

- 장기요양 급여종류별 급여이용수급자 수는 <표 3-1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2021년 기준, 급여이용수급자 중 방문요양 이용자가 약 2만 9천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복지용구 약 2만 6천 명, 노인요양시설 약 1만 4천 명 순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임
- 2024년에도 방문요양 이용자가 약 3만 2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용구 약 2만 9천 명, 노인요양시설 약 1만 7천 명으로 2021년과 동일한 급여유형별 이용 순위를 보임
- 2021년 대비 2024년의 급여이용수급자 증가율을 살펴보면, 통합재가서비스가 3,100.0%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 뒤로 노인요양시설(15.0%)과 주·야간보호(12.9%)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전체적으로 급여이용수급자 수는 증가세를 보이며, 특히 방문요양과 복지용구는 2021년과 2024년 모두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급여유형으로 나타나, 재가 중심의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한편, 통합재가서비스는 3,100.0%라는 매우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새로운 복합 돌봄 모델에 대한 수요의 급속한 확대를 보여줌
 - 이는 수급자의 돌봄 욕구가 단일 급여 유형을 넘어, 다양한 서비스를 유연하게 연계·통합한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함
- 또한,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의 증가율도 각각 15.0%, 12.9%로 두드러지게 나타나, 지역 내 돌봄 부담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자 하는 시설 기반 서비스의 보완적 수요도 함께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장기요양 수급자들의 서비스 선택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급여 제공 체계 강화와 함께 서비스 간 연계성 확보가 필수적임을 시사함

〈표 3-10〉 급여종류별 급여이용수급자

(단위: 명, %)

구분	2021(A)	2024(B)	증감률(A 대비 B)
계	49,871	55,299	10.9
방문요양	28,822	31,974	10.9
방문목욕	5,864	6,066	3.4
방문간호	2,006	1,939	-3.3
주·야간보호	7,297	8,239	12.9
단기보호	95	74	-22.1
복지용구	26,480	29,421	11.1
노인요양시설	14,413	16,579	15.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186	1,125	-5.1
통합재가서비스	1	32	3,100.0

주: 계의 급여이용수급자는 집계 기간 내 지역별, 급여종류별, 인정등급별 중복을 배제한 수.

자료: 통계청(2025g),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제4절 인천시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 현황

1. 7개 특·광역시 장기요양기관

- 인천시 장기요양기관 현황은 <표 3-11>과 같음
- 인천시의 장기요양기관 수는 2021년 1,643개소에서 2024년 1,873개소로 증가함
- 이는 7개 특·광역시 중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로, 인천시의 장기요양 인프라가 전국 상위권에 해당함을 보여줌
- 2021년 대비 2024년의 기관 수 증가율은 인천시가 14.0%로 전국 평균(9.5%)을 상회함
 - 특히 재가기관은 15.1% 증가하여 울산(21.6%)과 대구(15.7%)에 이어 높은 수준을 기록함
 - 시설기관 증가율도 11.1%로, 울산(44.9%)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인천시에서는 재가와 시설 기관 모두에서 균형 있는 증가세를 보임
- 이러한 수치는 인천시가 지역 내 고령인구 증가 및 장기요양 수요 확산에 대응하여 공급 기반을 적극적으로 확장해왔음을 시사함
 - 특히 재가 중심의 증가세는 지역사회 내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으며, 이는 수요자 중심 서비스 확산에 긍정적 신호로 평가할 수 있음

<표 3-11> 7개 특·광역시 장기요양기관 현황 및 증감률

(단위: 개소, %)

구분	2021(A)			2024(B)			증감률(A 대비 B)		
	계	재가	시설	계	재가	시설	계	재가	시설
전국	26,547	20,559	5,988	29,058	22,735	6,323	9.5	10.6	5.6
서울	3,621	3,110	511	3,742	3,262	480	3.3	4.9	-6.1
부산	1,410	1,291	119	1,495	1,373	122	6.0	6.4	2.5
대구	1,382	1,116	266	1,554	1,291	263	12.4	15.7	-1.1
인천	1,643	1,176	467	1,873	1,354	519	14.0	15.1	11.1
광주	843	746	97	926	826	100	9.8	10.7	3.1
대전	840	696	144	921	765	156	9.6	9.9	8.3
울산	359	310	49	448	377	71	24.8	21.6	44.9

주1: 연도말 요양기관 소재지 기준, 연도말 현재 지정 운영되고 있는 기관 대상.

주2: 재가기관의 급여 종류 간 중복 서비스 기관 수 제외.

자료: 통계청(2025h),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 군·구별 장기요양기관

- 인천시 군·구별 장기요양기관 현황은 <표 3-12>와 같음
- 2021년에는 남동구(350개)와 부평구(272개)의 장기요양기관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2024년에는 남동구(397개)와 서구(338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기관수는 2021년 1,643개소에서 2024년 1,873개소로 14.0% 증가함
- 군구별로는 용진군(128.6%), 중구(30.3%), 서구(29.0%) 순으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 반면, 동구(-4.7%), 부평구(-4.0%), 강화군(-1.5%)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재가기관은 같은 기간 1,176개소에서 1,354개소로 15.1% 늘었으며, 용진군(125.0%), 중구(40.5%), 서구(30.0%)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음
- 시설기관은 전체적으로 11.1% 증가하였으며, 용진군(133.3%), 서구(26.8%), 연수구(20.0%) 순으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 반면 동구(-11.1%), 강화군(-6.3%)과 부평구(-1.5%)에서는 시설기관 수가 감소함
- 종합적으로 볼 때, 인천시 대부분 지역에서 장기요양기관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지역 전반의 공급 기반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3-12> 인천시 군·구별 장기요양기관 현황 및 증감률

(단위: 개소, %)

구분	2021(A)			2024(B)			증감률(A 대비 B)		
	계	재가	시설	계	재가	시설	계	재가	시설
인천시	1,643	1,176	467	1,873	1,354	519	14.0	15.1	11.1
강화군	65	33	32	64	34	30	-1.5	3.0	-6.3
용진군	7	4	3	16	9	7	128.6	125.0	133.3
중구	66	42	24	86	59	27	30.3	40.5	12.5
동구	43	34	9	41	33	8	-4.7	-2.9	-11.1
미추홀구	229	181	48	280	227	53	22.3	25.4	10.4

구분	2021(A)			2024(B)			증감률(A 대비 B)		
	계	재가	시설	계	재가	시설	계	재가	시설
연수구	140	110	30	157	121	36	12.1	10.0	20.0
남동구	350	242	108	397	277	120	13.4	14.5	11.1
부평구	272	206	66	261	196	65	-4.0	-4.9	-1.5
계양구	209	144	65	233	164	69	11.5	13.9	6.2
서구	262	180	82	338	234	104	29.0	30.0	26.8

주1: 연도말 요양기관 소재지 기준, 연도말 현재 지정 운영되고 있는 기관 대상.

주2: 재가기관의 급여 종류 간 중복 서비스 기관 수 제외.

자료: 통계청(2025),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3. 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기관 수 및 정원

- 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기관 수와 정원 현황은 <표 3-13>과 같음
- 2021년 재가장기요양기관은 1,176개소로 전체 요양기관(1,643개소)의 71.6%를 차지하고 시설요양기관은 467개소로 28.4%를 차지함
 - 재가요양기관에서는 방문요양급여 기관이 980개소로 가장 많고, 시설요양기관 중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이 363개소로 가장 많음
- 2021년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정원은 25,267명임. 이 중 재가요양기관의 정원은 7,814명으로 30.9%를 차지하고, 시설요양기관은 17,453명으로 69.1%의 비율을 보임
- 2024년 재가요양기관은 1,354개소로, 이는 전체 장기요양기관(1,873개소)의 72.3%에 해당함
- 같은 해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정원은 31,208명이고. 이 중 재가요양기관과 시설요양기관의 비율은 각각 32.1%(10,010명)와 67.9%(21,198명)임
- 2021년 대비 2024년의 기관 및 정원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체 기관수는 14.0% 증가하였고, 정원은 23.5% 증가함
 - 같은 기간 동안 재가요양기관은 15.1% 증가하였고 시설요양기관은 11.1% 증가함

- 전체 장기요양기관에서 재가요양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증가한 것과 달리 시설요양기관은 2.5% 감소함
 - 2021년과 비교하였을 때 2024년의 장기요양기관 정원은 23.5% 증가함
 - 이 중 재가요양기관의 정원은 28.1% 증가하였고, 시설요양기관의 정원은 21.5% 증가한 모습을 보임
- 위 결과는 인천시 장기요양기관의 양적 팽창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재가기관 중심의 공급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 이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 강화라는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는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3-13〉 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기관 수 및 정원

(단위: 개소, 명, %)

구분	2021(A)		2024(B)		증감률(A 대비 B)	
	기관	정원	기관	정원	기관	정원
계	1,643	25,267	1,873	31,208	14.0	23.5
재가요양기관(소계)	1,176	7,814	1,354	10,010	15.1	28.1
재가요양기관(백분율)	71.6	30.9	72.3	32.1	1.0	3.9
방문요양	980	-	1,112	-	13.5	-
방문목욕	810	-	868	-	7.2	-
방문간호	57	-	61	-	7.0	-
주·야간보호	214	7,767	253	9,981	18.2	28.5
단기보호	7	47	4	29	-42.9	-38.3
복지용구	108	-	119	-	10.2	-
시설요양기관(소계)	467	17,453	519	21,198	11.1	21.5
시설요양기관(백분율)	28.4	69.1	27.7	67.9	-2.5	-1.7
노인요양시설	363	16,526	433	20,432	19.3	23.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04	927	86	766	-17.3	-17.4

주1: 연도말 요양기관 소재지 기준, 연도말 현재 지정 운영되고 있는 기관 대상.

주2: 재가기관의 급여 종류 간 중복 서비스 기관 수 제외.

자료: 통계청(2025h),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4. 요양보호사 현황

- 인천시 요양보호사 현황은 <표 3-14>와 같음
- 인천시 요양보호사 수는 2021년 32,672명(재가 26,816명, 시설 6,239명)에서 2024년 39,973명(재가 31,858명, 시설 8,482명)으로 22.3% 증가함
- 10개 군·구 중 요양보호사 수가 많은 지역으로는 2021년에는 연수구(7,407명)가 미추홀구(7,035명)보다 많았으나, 2024년에는 미추홀구(8,554명)가 연수구(7,854명)를 앞서며 순위가 바뀜
- 군·구별로는 서구가 107.5%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강화군(45.2%)과 부평구(31.4%) 역시 증가폭이 컸음
 - 반면 용진군은 -2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격차가 나타남
- 재가요양보호사는 전체적으로 18.8% 증가하였으며, 서구(160.6%)의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강화군(50.1%)과 부평구(24.3%)도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시설요양보호사는 36.0% 증가하였으며, 서구(61.8%), 부평구(56.5%), 동구(44.0%) 등에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종합적으로 볼 때, 인천시 요양보호사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서구를 중심으로 한 외곽지역과 강화군 등 일부 지역에서 급격한 증가세가 나타난 반면, 용진군은 감소세를 보임

<표 3-14> 인천시 요양보호사 현황

(단위: 명, %)

구분	2021(A)			2024(B)			증감률(A 대비 B)		
	계	재가	시설	계	재가	시설	계	재가	시설
계	32,672	26,816	6,239	39,973	31,858	8,482	22.3	18.8	36.0
강화군	1,286	932	355	1,867	1,399	474	45.2	50.1	33.5
용진군	1,305	1,170	136	1,025	897	129	-21.5	-23.3	-5.1
중구	5,790	5,054	753	7,070	6,051	1,038	22.1	19.7	37.8

구분	2021(A)			2024(B)			증감률(A 대비 B)		
	계	재가	시설	계	재가	시설	계	재가	시설
동구	3,233	2,854	389	3,801	3,250	560	17.6	13.9	44.0
미추홀구	7,035	5,781	1,279	8,554	6,808	1,781	21.6	17.8	39.2
연수구	7,407	6,514	925	7,854	6,732	1,148	6.0	3.3	24.1
남동구	5,888	5,131	790	6,877	5,816	1,098	16.8	13.4	39.0
부평구	5,103	4,043	1,091	6,704	5,027	1,707	31.4	24.3	56.5
계양구	1,258	803	493	1,402	940	495	11.4	17.1	0.4
서구	67	33	34	139	86	55	107.5	160.6	61.8

주1: 연도말 요양기관 소재지 기준.

주2: 계는 행정구역별, 급여종류별 중복 제외.

자료: 통계청(2025).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4

인천시 요양보호사 및 교육기관 수급 추정

- 제1절 인천시 장기요양인정자 추계
- 제2절 인천시 요양보호사 공급 추계
- 제3절 인천시 요양보호사 수요 추계
- 제4절 인천시 요양보호사 수급 균형 도모

제4장 인천시 요양보호사 및 교육기관 수급 추정

- 요양보호사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규모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선제조건인 장기요양인정자 수가 산출되어야 함
 - 이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의 장기요양인정자 수를 추계함¹²⁾

제1절 인천시 장기요양인정자 추계

1. 인천시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추이(2021~2024년)

- <표 4-1>은 인천시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인정자의 추이를 보여줌
- 노인 인정률은 인천시 65세 이상 인구 중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비율로 산출함
- 2015~2020년
 - 기존 하석철, 김제희(2021)의 선행연구에서 노인인구 대비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비율은 2015년 7.60%, 2016년 8.21%, 2017년 8.68%, 2018년 9.48%, 2019년 10.18%, 2020년 10.55%로 나타남

<표 4-1> 인천시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인정자 추이(2015~2020년)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인구	2,925,815	2,943,069	2,948,542	2,954,642	2,957,026	2,942,828
65세 이상 인구	312,905	324,255	345,024	362,675	384,548	411,483
전체 장기요양인정자	25,429	28,367	32,005	36,542	41,567	45,993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23,775	26,627	29,935	34,364	39,133	43,400
노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비율 (노인장기요양인정률)	7.60	8.21	8.68	9.48	10.18	10.55
인정률 증가분	-	0.61	0.46	0.80	0.70	0.37

자료: 통계청(2021a).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2021e).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2021b). 정보공개청구 자료. 하석철, 김제희(2021)에서 재인용.

12) 분석틀 구성을 위해 윤민석과 문진영(2019) 및 하석철과 김제희(2021)의 연구를 참고함.

○ 2021~2024년

- 2021년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수는 48,289명으로 65세 이상 노인(435,431명)의 11.09%에 해당함
- 2022년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수는 51,564명으로 65세 이상 노인(463,850명)의 11.12%에 해당함
- 2023년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수는 56,222명으로 65세 이상 노인(497,057명)의 11.31%에 해당함
- 2024년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수는 60,533명으로 65세 이상 노인(533,369명)의 11.35%에 해당함

〈표 4-2〉 인천시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인정자 변화(2021~2024년)

(단위: 명, %)

구분	2021	2022	2023	2024
전체 인구 (주민등록등록인구)	2,948,375	2,967,314	2,997,410	3,021,010
65세 이상 인구	435,431	463,850	497,057	533,369
전체 장기요양인정자	50,941	54,232	58,921	63,329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48,289	51,564	56,222	60,533
노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비율 (노인 장기요양인정률)	11.09	11.12	11.31	11.35
인정률 증가분	-	0.03	0.19	0.04

자료: 통계청(2025c), 「주민등록인구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2025), 정보공개청구 자료.

2. 인천시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추계(2025~2035년)

- 2021년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연도 간 증가분을 중심으로 노인 장기요양인정자 수를 산출하고자 함
 - 이는 향후 65세 이상 인구 추계값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노인장기요양인정률 평균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을 의미함
- 2021~2024년 각 인정률의 연도 간 증가분을 구하고 이에 대한 평균을 구하면 0.0867%이 도출됨
 - 이는 65세 인구의 수가 급증하면서 인정자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장기요양인정률 증가세의 비율은 안정화되었음을 나타냄
- 2015~2020년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기존의 추계의 경우 상대적으로 급격한 비율 증가를 보였던 2018년 이전 및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2019년과 2020년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따라 2025년 이후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인정자 수 추계에도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재산정의 필요성을 시사함
 - 기존 하석철·김제희(2021)의 선행연구에서 2015~2020년까지의 인정률을 바탕으로 산정한 기존의 평균 증가율은 0.59%이었으며, 새롭게 산출된 연도 간 증가분은 기존 산출된 인정률에 비해 약 0.50%만큼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위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기존 산출식을 통해 2030년의 추계는 16.45%이었으나, 새로운 산출식을 통해 계산된 2030년의 추계는 11.89%로 큰 차이를 보임
- 새롭게 산출한 장기요양인정률을 바탕으로 산정한 평균값을 반영하여 2025년 이후의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인정자 추계를 산출한 결과는 <표 4-3>과 같음
- 2025년 이후의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인정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 추계값(인천시, 2025)¹³⁾에 노인 장기요양인정률을 곱하여 산출함

13) 실제 주민등록 등록 인원(통계청, 2025c)과 2022년 인구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추계한 인천광역시(2025a)의 전체 인구추계 및 65세 이상 인구 추계 값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표 4-3〉 인천시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인정자 추계(2025~20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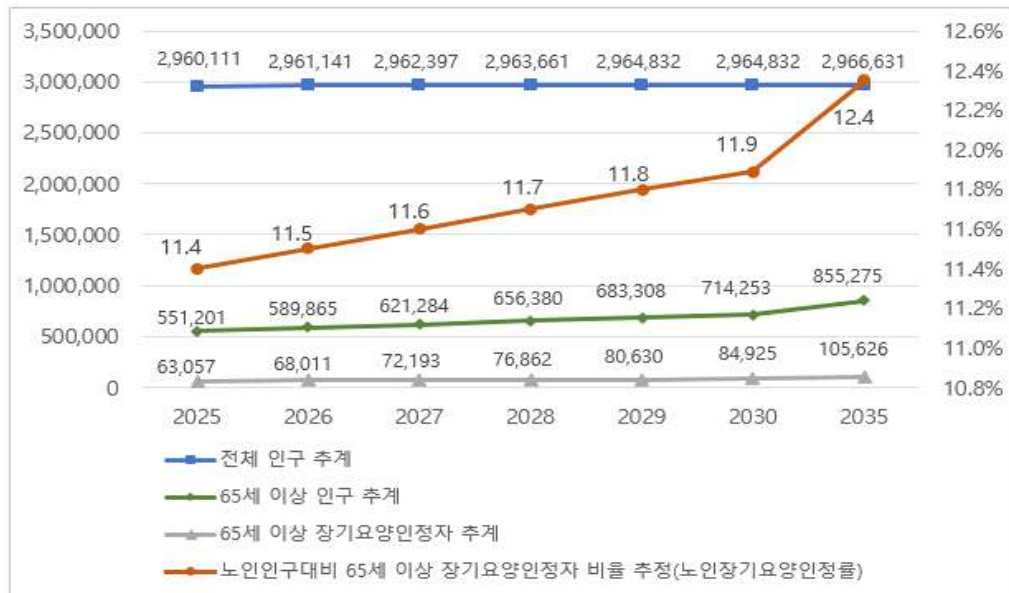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5
전체 인구 추계	2,960,111	2,961,141	2,962,397	2,963,661	2,964,832	2,964,832	2,966,631
65세 이상 인구 추계	551,201	589,865	621,284	656,380	683,308	714,253	855,275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추계	63,057	68,011	72,193	76,862	80,630	84,925	105,626
노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비율 추정(노인 장기요양인정률)	11.44	11.53	11.62	11.71	11.80	11.89	12.35

주: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추계 및 노인 장기요양인정률 추정은 산출식을 바탕으로 계산하여 연구자가 입력.
 자료: 인천광역시(2025a), 「인천광역시 군구별 장래인구추계 통계표(2020~2040년)」.

〈그림 4-1〉 인천시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인정자 추계(2025~2035년)

(단위: 명)



주: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추계 및 노인 장기요양인정률 추정은 산출식을 바탕으로 계산하여 연구자가 입력.
 자료: 인천광역시(2025a), 「인천광역시 군구별 장래인구추계 통계표(2020~2040년)」.

3. 군·구별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추이(2021~2024년)

- 2021~2024년의 군구별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 4-4>와 같음
- 대다수 군·구에서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연수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특징적이었고, 남동구와 서구는 2021년에 비해 2022년의 인정률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수를 65세 이상 인구 대비 비율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임
 - 2021년은 남동구가 11.80%로 인정자가 비율이 가장 높음. 뒤를 이어 서구가 11.49%, 계양구가 11.37%로 나타남
 - 2022년 기준 인정 비율은 남동구(11.70%)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동구(11.62%), 계양구(11.43%) 순으로 나타남
 - 2023년에는 동구가 12.47%로 가장 높은 인정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 남동구(11.88%)와 계양구(11.52%) 순으로 나타남
 - 2024년 기준 인정 비율은 동구(12.79%), 남동구(11.96%), 강화군(11.51%) 순으로 나타남
- 65세 이상 장기요양 인정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장기요양 인정자 수가 남동구, 부평구, 미추홀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2024년에는 미추홀구 대신 서구가 3위를 차지하는 변동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됨

<표 4-4> 인천시 군·구별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인정자 변화

(단위: 명, %)

구분		2021	2022	2023	2024
강화군	65세 이상 인구	23,751	24,763	25,691	27,022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2,618	2,728	2,894	3,110

구분		2021	2022	2023	2024
	노인 장기요양인정률	11.02	11.02	11.26	11.51
	인정률 증가분	-	0.00	0.24	0.25
용진군	65세 이상 인구	5,765	6,100	6,439	6,748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445	481	510	536
	노인 장기요양인정률	7.72	7.89	7.92	7.94
	인정률 증가분	-	0.17	0.03	0.02
증구	65세 이상 인구	21,735	23,366	24,912	26,621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2,342	2,530	2,807	3,024
	노인 장기요양인정률	10.78	10.83	11.27	11.36
	인정률 증가분	-	0.05	0.44	0.09
동구	65세 이상 인구	14,670	14,703	15,240	15,804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1,672	1,709	1,901	2,021
	노인 장기요양인정률	11.40	11.62	12.47	12.79
	인정률 증가분	-	0.22	0.85	0.32
미추 홀구	65세 이상 인구	72,320	75,765	79,880	84,471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7,648	8,184	8,929	9,584
	노인 장기요양인정률	10.58	10.80	11.18	11.35
	인정률 증가분	-	0.22	0.38	0.17
연수구	65세 이상 인구	41,021	44,014	47,731	52,160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4,392	4,570	4,922	5,229
	노인 장기요양인정률	10.71	10.38	10.31	10.02
	인정률 증가분	-	-0.33	-0.07	-0.29
남동구	65세 이상 인구	75,633	80,000	85,478	91,471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8,927	9,356	10,156	10,941
	노인 장기요양인정률	11.80	11.70	11.88	11.96
	인정률 증가분	-	-0.10	0.18	0.08

구분		2021	2022	2023	2024
부평구	65세 이상 인구	76,493	81,584	87,260	93,125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8,339	9,111	9,928	10,700
	노인 장기요양인정률	10.90	11.17	11.38	11.49
	인정률 증가분	-	0.27	0.21	0.11
계양구	65세 이상 인구	40,840	43,724	47,042	51,136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4,645	4,996	5,417	5,759
	노인 장기요양인정률	11.37	11.43	11.52	11.26
	인정률 증가분	-	0.06	0.09	-0.26
서구	65세 이상 인구	63,203	69,831	77,384	84,811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7,261	7,899	8,758	9,629
	노인 장기요양인정률	11.49	11.31	11.32	11.35
	인정률 증가분	-	-0.18	0.01	0.03

주: 노인 장기요양인정률 =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 65세 이상 노인인구)×100.

자료: 통계청(2025c). 「주민등록인구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2025). 정보공개청구 자료.

4. 군·구별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추계(2025~2035년)

- 인천시 군·구별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추계를 앞선 인천시 추계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시하면 <표 4-5>와 같음
- 2025년부터 65세 이상 인구추계 값(통계청, 2025a)에 노인 장기요양인정률(추정치)을 곱하여 장기요양인정자 수를 산출함
 - 2025년 대비 2035년의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연수구(93.7%), 서구(83.4%), 중구(72.7%) 순으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5〉 인천시 군·구별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인정자 추계(2025~2035년)

(단위: 명, %)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5
강화군	65세 이상 인구	27,833	29,357	30,700	32,020	33,120	34,335	40,278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3,229	3,429	3,614	3,804	3,955	4,142	5,018
	노인 장기요양인정률	11.6	11.68	11.77	11.86	11.94	12.03	12.46
	인정률 증가분	0.0867	0.0867	0.0867	0.0867	0.0867	0.0867	0.0867
옹진군	65세 이상 인구	6,721	7,137	7,524	7,950	8,252	8,641	10,372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540	579	617	659	713	731	896
	노인 장기요양인정률	8.03	8.11	8.2	8.29	8.37	8.46	8.89
	인정률 증가분	0.0867	0.0867	0.0867	0.0867	0.0867	0.0867	0.0867
중구	65세 이상 인구	28,023	30,018	31,641	33,452	34,991	36,663	45,027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3,209	3,461	3,677	3,917	4,067	4,356	5,542
	노인 장기요양인정률	11.45	11.53	11.62	11.71	11.79	11.88	12.31
	인정률 증가분	0.0867	0.0867	0.0867	0.0867	0.0867	0.0867	0.0867
동구	65세 이상 인구	15,564	16,166	16,556	17,068	17,409	17,849	20,047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2,005	2,095	2,187	2,308	2,386	2,490	2,849
	노인 장기요양인정률	12.88	12.96	13.05	13.14	13.22	13.31	13.74
	인정률 증가분	0.0867	0.0867	0.0867	0.0867	0.0867	0.0867	0.0867
미추홀구	65세 이상 인구	86,968	91,554	95,207	99,453	102,543	106,157	123,627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9,949	10,547	11,145	11,651	12,080	12,520	15,700
	노인 장기요양인정률	11.44	11.52	11.61	11.7	11.78	11.87	12.3
	인정률 증가분	0.0867	0.0867	0.0867	0.0867	0.0867	0.0867	0.0867
연수구	65세 이상 인구	54,547	59,550	64,053	68,937	72,923	77,249	97,377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5,515	6,069	6,588	7,153	7,620	8,160	10,682
	노인 장기요양인정률	10.11	10.19	10.28	10.37	10.45	10.54	10.97
	인정률 증가분	0.0867	0.0867	0.0867	0.0867	0.0867	0.0867	0.0867
남동구	65세 이상 인구	95,902	102,687	108,145	114,195	118,919	124,524	149,348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11,556	12,478	13,178	14,047	14,734	15,544	19,234
	노인 장기요양인정률	12.05	12.13	12.22	12.31	12.39	12.48	12.91
	인정률 증가분	0.0867	0.0867	0.0867	0.0867	0.0867	0.0867	0.0867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5
부평구	65세 이상 인구	94,723	100,383	104,693	109,678	113,306	117,446	135,383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10,969	11,705	12,333	12,986	13,506	14,141	16,842
	노인 장기요양인정률	11.58	11.66	11.75	11.84	11.92	12.01	12.44
	인정률 증가분	0.0867	0.0867	0.0867	0.0867	0.0867	0.0867	0.0867
계양구	65세 이상 인구	53,853	58,342	61,853	65,844	68,588	71,838	85,307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6,112	6,668	7,095	7,603	8,018	8,615	9,805
	노인 장기요양인정률	11.35	11.43	11.52	11.61	11.69	11.78	12.21
	인정률 증가분	0.0867	0.0867	0.0867	0.0867	0.0867	0.0867	0.0867
서구	65세 이상 인구	87,067	94,671	100,912	107,783	113,257	119,551	148,509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9,960	10,907	11,695	12,535	13,236	13,942	18,267
	노인 장기요양인정률	11.44	11.52	11.61	11.7	11.78	11.87	12.3
	인정률 증가분	0.0867	0.0867	0.0867	0.0867	0.0867	0.0867	0.08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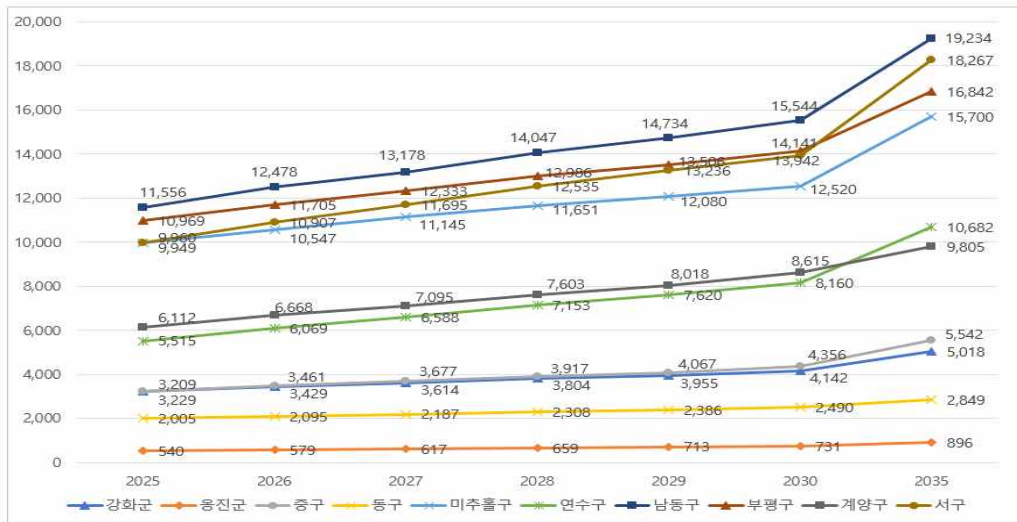
주: 노인 장기요양인정률 =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 65세 이상 노인인구)×100.

자료: 통계청(2025c), 「주민등록인구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2025).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

○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인천시 군·구별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추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4-2>와 같음

<그림 4-2> 인천시 군·구별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인정자 추계(2025~2035년)

(단위: 명)



제2절 인천시 요양보호사 공급 추계

- 인천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적정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천시 요양보호사의 공급 현황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공급에 대한 추정이 필요함
- 먼저 <표 4-6>은 인천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현황을 보여줌
- 2024년 12월 말 기준 인천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총 28개소이며, 군·구별로 보면 남동구가 6개소로 가장 많고, 옹진군은 교육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교육기관 소재지별 합격 인원(2024년 기준)은 남동구가 1,503명으로 가장 많고, 강화군이 118명으로 가장 적음
- 교육기관 1개소 당 합격 인원은 연수구가 393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2024년 2개소 중 1개소가 폐업함을 감안한다면(폐업기관에서 247명 배출). 계양구가 369명으로 가장 많고, 강화군이 118명으로 가장 적음
- 합격 인원 대비 급여이용자 수를 보면 강화군(23명)과 연수구(13명)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계양구(5명)는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확인됨
- 교육기관 1개소당 합격 인원 대비 급여이용자 수는 남동구가 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추홀구(37명), 부평구(35명), 서구(34명)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동구와 연수구는 13명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 이러한 결과는 강화군에서 교육기관 부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옹진군의 경우 기존에 교육기관이 없으므로 급여이용자 증가에 따라 신규 기관 지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또한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등은 급여이용자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교육기관을 통해 장기요양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연수구의 경우, 연수요양보호사교육원이 2024년 8월 21일 폐지됨에 따라 2024년에는 교육기관을 통해 합격자가 발생했으나, 2025년 이후에는 요양보호사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향후 증가하는 장기요양급여이용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기관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4-6〉 인천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2024년 기준)

(단위: 명)

구분	교육기관	합격 인원 (A)	교육기관 1개소 당 합격 인원 (B)	전체 급여이용자(C)	C/A	C/B
계	28	7,123	254	56,231	8	221
강화군	1	118	118	2,738	23	23
옹진군	0	-	-	502	-	-
중구	2	337	169	2,784	8	17
동구	2	273	137	1,821	7	13
미추홀구	5	1,173	235	8,746	7	37
연수구	1	393	393	4,939	13	13
남동구	6	1,503	251	10,263	7	41
부평구	4	1,149	287	9,927	9	35
계양구	3	1,108	369	5,441	5	15
서구	4	1,069	267	9,070	8	34

주: 2024년 12월 말 기준.

자료: 인천광역시(2025). 노인정책과 내부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25). 정보공개청구 자료.

- 〈표 4-7〉은 인천시 요양보호사 공급 현황을 보여줌. 구체적으로 2014년까지 52,721명이 자격증을 발급받았고, 2015년부터 2024년까지 82,877 명이 자격증을 발급받아 2024년 기준 총 135,598 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음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응시인원이 약 1만 2천~1만 3천 명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2024년에 약 7천 명대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2024년 합격 인원 역시 급격하게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음
- 일부 연도에서 시험 합격 인원보다 자격증 발급인원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전년도 합격자가 다음 연도에 자격증을 발급받는 등 발급 시점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4-7〉 인천시 요양보호사 공급 현황

(단위 : 명, %)

구분	응시인원	합격 인원	합격률	자격증 발급인원	자격증 발급률
계	-	-	-	135,598	-
2024	8,199	7,123	86.9	7,385	103.7
2023	14,288	12,743	89.2	12,258	96.2
2022	14,628	13,437	91.9	13,500	100.5
2021	12,783	11,720	91.7	13,341	113.8
2020	9,745	8,526	87.5	6,743	79.1
2019	9,233	8,260	89.5	8,735	105.8
2018	6,602	5,937	89.9	5,669	95.5
2017	5,765	5,101	88.5	5,076	99.5
2016	4,987	4,367	87.6	4,344	99.5
2015	5,105	4,344	85.1	5,826	134.1
~2014	-	-	-	52,721	-

주1: 자격증 발급인원은 지난해 미발급자 발급인원 포함.

주2: 2020년까지의 자료는 인천광역시(2021) 내부자료로 하석철, 김제희(2021)에서 재인용.

자료: 인천광역시(2025). 노인정책과 내부자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2025). 지역별 요양보호사 인원 통계.

- 인천시 및 군·구별 요양보호사 합격 인원은 <표 4-8>과 같음
- 선행연구인 하석철·김제희(2021)의 연구에 따르면 인천시 전체를 기준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합격 인원은 연평균 6,438명이었음

<표 4-8> 인천시 군·구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 인원

(단위: 명)

구분	2016 ~2020	2021	2022	2023	2024	2021~2024	
						누계	연 평균 합격 인원
계	32,191	11,720	13,437	12,743	7,123	45,023	11,256
강화군	183	69	156	129	118	472	118
옹진군	-	-	-	-	-	-	-
중구	828	781	420	429	337	1,967	492
동구	313	483	448	537	273	1,741	435
미추홀구	4,755	1,507	1,911	1,888	1,173	6,479	1,620
연수구	1,333	926	1,207	1,028	393	3,554	889
남동구	8,388	2,273	2,680	2,605	1,503	9,061	2,265
부평구	7,254	2,443	2,681	2,400	1,149	8,673	2,168
계양구	5,494	1,704	1,953	1,953	1,108	6,718	1,680
서구	3,643	1,534	1,981	1,774	1,069	6,358	1,590

주1: 2021년, 2022년 자격증 발급인원은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 내부자료 이외 한국보건직업인국가시험원 자료.

주2: 2016~2020년 자료는 인천광역시(2021) 내부자료로 하석철, 김제희(2021)에서 재인용.

자료: 인천광역시(2025) 노인정책과 내부자료, 한국보건직업인국가시험원(2025) 자료.

- 요양보호사의 추계 계산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격 취득자 중 폐업 기관을 제외한 수치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기존 폐업기관을 제외한 수치로 다시 살펴보면 다음 <표 4-9>와 같음
- 2021~2024년의 요양보호사 연평균 합격 인원을 살펴보면 연평균 11,226명이었으며, 구별로는 남동구가 2,26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평구는 2,168명, 계양구가 1,679명, 미추홀구 1,620명, 서구 1,562명 순으로 나타남

〈표 4-9〉 인천시 군·구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 인원_폐업기관 제외

(단위 : 명)

구분	2016 ~2020	2021	2022	2023	2024	2021~2024	
						누계	연 평균 합격 인원
계	32,191	11,716	13,324	12,742	7,121	44,903	11,226
강화군	183	69	156	129	118	472	118
옹진군	-	-	-	-	-	-	-
중구	828	781	420	429	336	1,966	492
동구	313	483	448	537	273	1,741	435
미추홀구	4,755	1,507	1,911	1,888	1,173	6,479	1,620
연수구	1,333	926	1,206	1,027	392	3,551	888
남동구	8,388	2,270	2,680	2,605	1,503	9,058	2,265
부평구	7,254	2,443	2,681	2,400	1,149	8,673	2,168
계양구	5,494	1,703	1,953	1,953	1,108	6,717	1,679
서구	3,643	1,534	1,869	1,774	1,069	6,246	1,562

주1: 2021년, 2022년 자격증 발급인원은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 내부자료 이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자료.

주2: 2016~2020년 자료는 인천광역시(2021) 내부자료로 하석철·김제희(2021)에서 재인용.

자료: 인천광역시(2025) 노인정책과 내부자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2025) 자료.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2021년부터 기존 3회에서 4회로 증가됨에 따라 연평균 합격 인원 및 자격증 발급인원 추정에 있어서 2021년을 기준으로 달라질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누계 및 연평균 합격 인원은 2021~2024년을 기준으로 산정함
 - 선행연구인 하석철, 김제희(2021)는 2016~2020년 자격증 발급인원을 연평균 약 6,113명으로 추정하였으며, 2021년 이후 시험 횟수 증가에 따라 연평균 8,000여 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그러나 실제로는 연평균 11,621명이 자격증을 발급받아, 예측치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표 4-8>의 연평균 합격 인원과 비교할 때, 연평균 약 365명 정도가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자격증 발급자에 비해 요양보호사로서의 활동 의지가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있음

<표 4-10> 인천시 군·구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인원(2021~2024년)

(단위 :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1~2024 누계	2016~2020 연 평균 자격증 발급인원 (추정)	2021~2024 연 평균 자격증 발급인원
계	13,341	13,500	12,258	7,385	46,484	6,113	11,621
강화군	69	156	128	118	471	35	118
옹진군	-	-	-	-	-	-	0
중구	847	422	426	310	2,005	158	501
동구	491	449	490	304	1,734	60	434
미추홀구	1,951	1,938	1,853	1,174	6,916	903	1,729
연수구	1,163	1,204	1,007	398	3,772	254	943
남동구	2,512	2,675	2,461	1,625	9,273	1,593	2,318
부평구	2,650	2,689	2,347	1,191	8,877	1,378	2,219
계양구	1,907	1,958	1,835	1,166	6,866	1,044	1,717
서구	1,751	2,009	1,711	1,099	6,570	692	1,643

주1: 2021년, 2022년 자격증 발급인원은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 내부자료 이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자료.

주2: 2016~2020년 연 평균 자격증 발급인원(추정)은 하석철, 김제희(2021)에서 재인용.

자료: 인천광역시(2025). 노인정책과 내부자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2025).

- 요양보호사의 추계 계산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격 취득자 중 폐업기관을 제외한 수치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기존 폐업기관을 제외한 수치로 다시 살펴보면 다음 <표 4-11>과 같음
 - 폐업기관을 제외하고 조정된 표(4-11)을 살펴보면, 실제 연평균 10,896명이 자격증을 발급하였으며, 위의 <표 4-9>에서의 연평균 합격 인원과 비교해 볼 때 연평균 약 330명 정도가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음

〈표 4-11〉 인천시 군·구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인원(2021~2024년)_폐업 기관 제외

(단위 :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1~2024 누계	2016~2020 연 평균 자격증 발급인원 (추정)	2021~2024 연 평균 자격증 발급인원
계	11,278	12,664	12,257	7,384	43,583	6,113	10,896
강화군	69	156	128	118	471	35	118
옹진군	-	-	-	-	-	-	0
중구	780	418	426	309	1,933	158	483
동구	475	443	490	304	1,712	60	428
미추홀구	1,497	1,878	1,853	1,174	6,402	903	1,601
연수구	926	1,200	1,006	398	3,530	254	883
남동구	2,262	2,669	2,461	1,625	9,017	1,593	2,254
부평구	2,433	2,655	2,347	1,191	8,626	1,378	2,157
계양구	1,703	1,953	1,835	1,166	6,657	1,044	1,664
서구	1,133	1,292	1,711	1,099	5,235	692	1,309

주1: 2021년, 2022년 자격증 발급인원은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 내부자료 이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자료.

주2: 2016~2020년 연 평균 자격증 발급인원(추정)은 하석철·김제희(2021)에서 재인용.

자료: 인천광역시(2025) 노인정책과 내부자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2025) 자료.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2023~2027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전국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의 약 23.8%가 실제 요양보호사로 종사한다고 보고됨
 - 이를 바탕으로 산출하면(보건복지부, 2023a), 연평균 약 2,593명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가 신규 종사자로 유입된다고 가정할 수 있음
- 2024년 기준 인천시의 현업종사 요양보호사는 39,973명으로, 2024년까지의 자격취득 인원인 135,598명의 29.5%가 실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4-12〉 참고)
- 현업종사 요양보호사의 증가에는 신규자격취득자의 유입과 기존 자격취득자의 취업 그리고 기존 요양보호사의 퇴직 및 실업 등의 영향이 포함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상 요양보호사 신규 자격취득 대비 현업종사 요양보호사 증가 비율을 단순 비교로 살펴보고자 함

〈표 4-12〉 인천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및 현업종사 요양보호사 인원(2020~2024년)

(단위: 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현황	89,114	102,455	115,955	128,213	135,598
요양보호사 신규 자격취득	6,743	13,341	13,500	12,258	7,385
현업종사 요양보호사	29,511	32,672	36,101	38,885	39,973
비율	33.1	31.9	31.1	30.3	29.5

자료: 인천광역시(2025). 노인정책과 내부자료.

- 위 〈표 4-11〉에서와 마찬가지로 요양보호사의 추계 계산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격 취득자 중 폐업기관을 제외한 수치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기존 폐업기관을 제외한 수치로 다시 살펴보면 다음 〈표 4-13〉과 같음
- 2024년 기준 인천시의 현업종사 요양보호사는 39,973명으로, 2024년까지의 자격증 발급 누계인원에서 폐업기관을 제외한 인원인 132,697명을 기준으로는 30.1%가 실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1년에는 요양보호사 신규 자격취득자가 13,341명이었으나, 현업종사 요양보호사의 증가는 2020년 대비 3,161명으로, 신규 자격취득자 대비 23.69%정도 수준임
 - 2022년에는 요양보호사 신규 자격취득자가 13,500명이었으나, 현업종사 요양보호사의 증가는 2021년 대비 3,429명으로, 신규 자격취득자 대비 25.40%정도 수준임
 - 2023년에는 요양보호사 신규자격취득자가 12,258명이었으나, 현업종사 요양보호사의 증가는 2022년 대비 2,784명으로, 신규 자격취득자 대비 22.71%정도 수준임
 - 2024년에는 요양보호사 신규자격취득자가 7,385명으로 예년에 비해 낮았으며, 현업종사 요양보호사의 증가는 2023년 대비 1,088명으로, 신규 자격취득자 대비 14.73%정도 수준임

- 이는 연도별로 현업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증가 속도가 일정하지 않음을 보여주며, 신규 자격취득자 수와의 비교에서도 연도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

〈표 4-13〉 인천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및 현업종사 요양보호사 인원(2020-2024년)_폐업 기관 제외

(단위: 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현황 (폐업기관 제외)(a)	89,114	100,392	113,056	125,313	132,697
요양보호사 신규 자격취득(b)	6,743	13,341	13,500	12,258	7,385
현업종사 요양보호사(c)	29,511	32,672	36,101	38,885	39,973
현업종사 요양보호사 증가(d)	-	3,161	3,429	2,784	1,088
비율(c/a)	33.2	32.5	31.9	31.0	30.1
신규자격취득자 대비 현업 요양보호사 비율(d/b)	-	23.69	25.40	22.71	14.73

자료: 인천광역시(2025) 노인정책과 내부자료.

- 연도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향후 공급을 추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자료를 기반으로, 현업종사 요양보호사 증가 값의 평균(4년간 연평균 증가인원 2,616명)을 활용하여 2025년 이후의 공급을 추계하고자 함¹⁴⁾
- 2025년 이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추계는 2024년 기준 누적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인원에 연평균 신규 자격취득 인원을 반영하여 산정함
- 특히 연구구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폐지 등을 반영하여, 〈표 4-11〉에서 산정된 연평균 신규 자격취득 인원 10,896명에서 연구구 평균인원 883명을 제외한 10,013명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함

14) 연구구의 경우 2024년에 유일하게 존재했던 교육원 1개소가 폐지됨에 따라 2025년 이후에는 요양보호사가 배출되지 않은 것을 반영해야 함.

- 또한 2024년까지 4년간의 현업종사 요양보호사 증가값 평균 2,616명 중, 연수구에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인 약 266명¹⁵⁾을 제외한 2,350명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함
- 2025년 이후 현업종사 요양보호사 추계는 2024년 기준 현업종사 요양보호사 인원에 2021~2024년의 연평균 현업종사 요양보호사 증가량 산출분을 더해(연수구 제외) 2,350명을 매년 추가하여 계산함
- 2025년 현업 종사 요양보호사는 42,323명으로 추계되며, 이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대비 29.66%임
- 2030년 현업종사 요양보호사는 54,073명으로 추계되며, 이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대비 28.05%임
- 2035년 현업종사 요양보호사는 65,823명으로 추계되며, 이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대비 27.11%임
- 결론적으로, 2025~2035년 요양보호사 공급 추계 결과 자격증 취득 대비 현업종사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교육기관 확충과 자격취득자의 취업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함

〈표 4-14〉 인천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및 현업종사 요양보호사 추계(2025~2035년)

(단위: 명, %)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5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추계	142,710	152,723	162,736	172,749	182,762	192,775	242,840
현업종사 요양보호사 추계	42,323	44,673	47,023	49,373	51,723	54,073	65,823
비율	29.66	29.25	28.90	28.58	28.30	28.05	27.11

15) (연평균 2021-2024 자격증 발급인원)883명×(2024년 기준 현업 요양보호사 비율)0.301=265.783

〈그림 4-3〉 인천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및 현업종사 요양보호사 추계(2025~2035년)



- 군·구별로 살펴보면, 2024년 기준 남동구가 8,554명으로 가장 많으며, 부평구 7,854명, 미추홀구 7,070명으로 그 뒤를 이음(〈표 4-15〉 참고)
- 용진군이 139명으로 현업종사 요양보호사 수가 가장 적었으며, 그 다음으로 동구 1,025명, 강화군 1,402명, 중구 1,867명 순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기준 군·구별 비율은 강화군 3.10%, 용진군 0.31%, 중구 4.12%, 동구 2.26%, 미추홀구 15.61%, 연수구 8.39%, 남동구 18.89%, 부평구 17.34%, 계양구 15.18%, 서구 14.80%임
- 2025년부터는 2021~2024년의 연평균 현업요양보호사 증가량 산출분(폐업기관 제외)인 2,350명¹⁶⁾을 군·구별 비율에 맞추어 추가하여 추계함¹⁷⁾
- 그러나 2025년 이후 연수구의 추가 요양보호사 공급 인원이 없을 것을 가정한 군·구별 조정 비율은 강화군 3.38%, 용진군 0.34%, 중구 4.12%, 동구 2.26%, 미추홀구 17.04%, 남동구 20.62%, 부평구 18.93%, 계양구 16.57%, 서구 16.16%임

16) 연수구 제외

17) 군구별 요양보호사의 합과 전체 인천시 추계의 숫자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는 요양보호사가 하나의 군구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구에 걸쳐서 일하고 있다는 추정을 할 수 있음.

- 이를 연도별로 환산하면 강화군은 매년 대략 73명, 옹진군은 7명, 중구는 97명, 동구는 53명, 미추홀구는 367명, 남동구는 444명, 부평구는 408명, 계양구는 357명, 서구는 348명, 연수구는 0명씩 늘어나는 것으로 산출됨.

〈표 4-15〉 인천시 군·구별 현업종사 영양보호사 추계(2024~2035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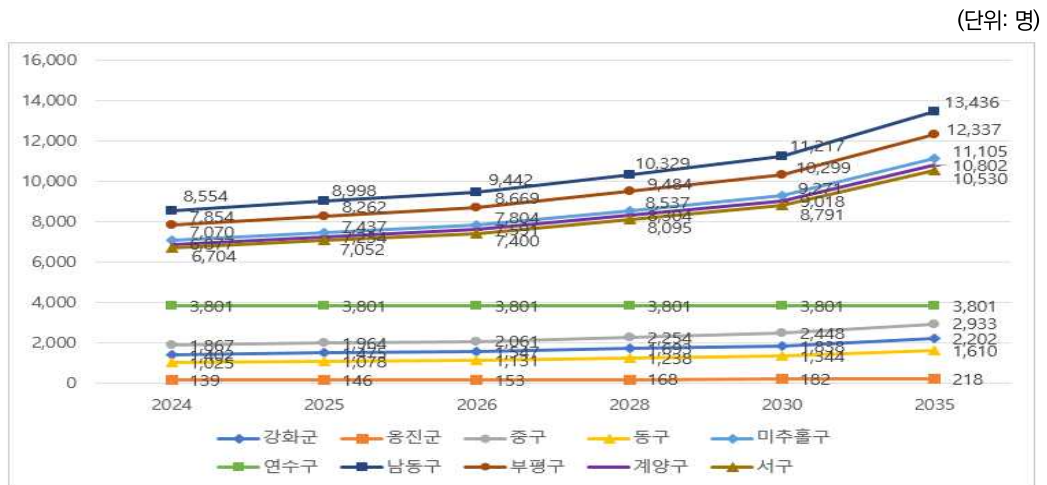
구분	2024	2025	2026	2028	2030	2035
강화군	1,402	1,475	1,547	1,693	1,838	2,202
옹진군	139	146	153	168	182	218
중구	1,867	1,964	2,061	2,254	2,448	2,933
동구	1,025	1,078	1,131	1,238	1,344	1,610
미추홀구	7,070	7,437	7,804	8,537	9,271	11,105
연수구	3,801	3,801	3,801	3,801	3,801	3,801
남동구	8,554	8,998	9,442	10,329	11,217	13,436
부평구	7,854	8,262	8,669	9,484	10,299	12,337
계양구	6,877	7,234	7,591	8,304	9,018	10,802
서구	6,704	7,052	7,400	8,095	8,791	10,530

주1: 2024년 자료는 통계청 공식 통계를 활용하였고, 이후 연도의 수치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산출식에 근거하여 연구자가 추정한 값임.

주2: 소수점 이하 처리 과정에서 일부 수치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2025), 시군구별 장기요양기관 인력현황.

〈그림 4-4〉 군·구별 현업종사 영양보호사 추계(2024~2035년)



자료: 통계청. (2025), 시군구별 장기요양기관 인력현황.

제3절 인천시 요양보호사 수요 추계

1. 인천시 요양보호사 수요 추이(2017~2024)

- 인천시 요양보호사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우선 2017년부터 2024년까지의 급여유형별 이용자 수 추이를 살펴봄
-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2017년부터 2024년까지의 요양보호사 수요 추이를 살펴보면 <표 4-16>과 같음
- 급여 유형별 이용자 수를 기초로 필요 요양보호사를 계산함. 이를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적용함
 - 시설급여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에 맞추어 2021년까지는 이용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인을 적용하고(법제처, 2020), 2022~2024년은 이용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적용함(보건복지부, 2025)
 - 재가급여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1인당 노인 1.2명의 돌봄을 적용함(이윤경 외, 2017)
-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4-16>과 같음

<표 4-16> 인천시 요양보호사 수요 추이(2017~2024년)

(단위: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65세 이상 인정자 수	29,935	34,364	39,133	43,400	48,289	51,564	56,222	60,533
65세 이상 급여이용자	계	26,391	29,999	34,128	37,630	41,968	45,466	49,837
	시설	9,602	10,549	11,183	11,480	12,168	13,183	14,396
	재가	16,945	19,616	22,928	26,063	29,896	33,070	36,154
필요 요양보호사 추계	계	17,962	20,566	23,580	26,311	29,780	33,290	36,387
	시설	3,841	4,220	4,473	4,592	4,867	5,732	6,259
	재가	14,121	16,347	19,107	21,719	24,913	27,558	30,128

주1: 재가급여는 복지용구급여 제외 값.

주2: 2017~2020의 필요요양보호사 추계는 하석철, 김제희(2021)에서 인용.

주3: 계 - 발체 연월 기준, 인정자 중 장기요양급여비용이 1회 이상 지급된 수급자(사망, 중복제외) 즉, 시설급여, 재가급여, 기타급여(복지용구), 가정요양비의 합에 중복 제외.

자료: 인천광역시(2025). 노인정책과 내부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25). 정보공개청구 자료.

2. 인천시 요양보호사 수요 추계(2025~2035)

- 인천시 요양보호사 수요 추계를 하기 위해 앞서 산출한 65세 이상 장기요양 인정자 수와 65세 이상 급여이용자 수를 이용함
- 2025년부터의 급여이용자 수는 2024년의 급여이용자 비율(88.94%)을 유지하는 것으로 추계함¹⁸⁾
-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이용률 차이를 이용하여 급여유형별 이용자 수를 추계함
 - 급여이용자의 추계 목적이 필요 요양보호사 수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가급여 이용자 수는 전체 재가급여 이용자 중 요양보호사가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복지용구급여 이용자를 제외한 값을 이용함
 - 2024년의 시설 및 재가급여이용자의 비율을 바탕으로 시설 약 28.2%, 재가 약 71.8%로 분배하여 추계함
 - 시설급여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에 맞추어 2025년부터 이용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적용함(보건복지부, 2025)
 - 재가급여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1인당 노인 1.2명의 돌봄을 적용함(이윤경 외, 2017)
 - 2025년 이후 급여 이용자 ‘계’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합산하여 단순화함. 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계19’와는 계산 방식이 다르지만, 향후 요양보호사 수요를 추계하는 데 있어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와 가족요양의 이용이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 또한 일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중복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필요하기 때문에 중복에 대한 제외도 고려하지 않았음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계한 급여이용자와 필요 요양보호사는 다음과 같음

18) 급여이용자 추계에 있어서 선행연구(윤민석, 문진영, 2019; 하석철, 김제희, 2021)를 참고하여 가장 최근(2024년)의 급여이용자 비율(88.9%)이 유지될 것을 가정하여 2025년부터의 급여이용자 수를 추계함.

19) 계=시설+재가+가족요양+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제외)-중복

- 2025년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이용자는 각각 약 15,855명과 40,228명으로 예측되며, 2035년에는 26,558명과 67,386명으로 증가하여 총 93,944명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것으로 보임
- 급여이용자를 기초로 산출한 필요 요양보호사는 2025년에 41,073명(시설: 7,550명, 재가: 33,523명)이고, 2035년에는 68,802명의 요양보호사(시설: 12,647명, 재가: 56,155명)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됨

〈표 4-17〉 인천시 요양보호사 수요 추계(2025~2035년)

(단위: 명)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5
65세 이상 인정자 수		63,057	68,011	72,193	76,862	80,630	84,925	105,626
65세 이상 급여이용자	계	56,083	60,489	64,208	68,361	71,712	75,532	93,944
	시설	15,855	17,101	18,152	19,326	20,273	21,353	26,558
	재가	40,228	43,388	46,056	49,035	51,439	54,179	67,386
필요 요양보호사	계	41,073	44,300	47,024	50,065	52,520	55,317	68,802
	시설	7,550	8,143	8,644	9,203	9,654	10,168	12,647
	재가	33,523	36,157	38,380	40,862	42,866	45,149	56,155

주: 재가급여는 복지용구급여 제외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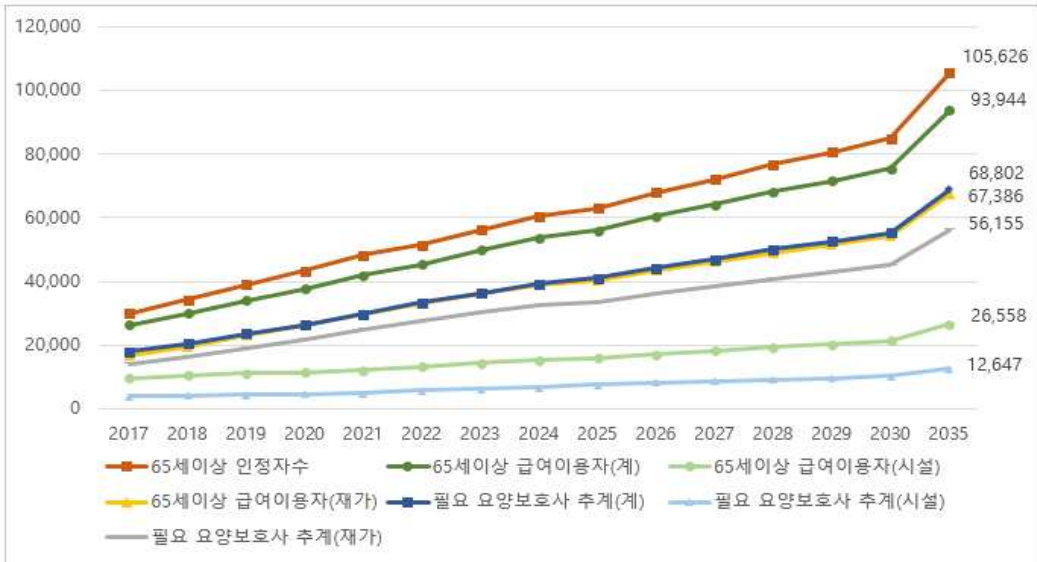
자료: 인천광역시(2025). 노인정책과 내부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25).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

3. 군·구별 급여유형별 이용자 수 추계(2017~2035)

- 앞선 인천시 요양보호사 추계 방법을 적용하여 인천시 군·구별 필요 요양보호사를 추계하여 정리하면 〈표 4-18〉과 같음
- 요양보호사 추계를 위해 인천시 추계와 같이 다음의 조건을 적용함
 - 2025년부터의 급여이용자는 2024년 인정자 대비 급여이용자 비율 유지 가정
 - 재가급여 이용자에서 복지용구급여 이용자 제외

〈그림 4-5〉 인천시 65세 이상 노인 급여이용자 및 필요 요양보호사 추계(2017~2035년)

(단위: 명)



- 2024년 기준 시설이용자와 재가이용자를 합하였을 경우 급여이용자의 ‘계’ 비율과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계’의 산출방식 차이 및 소수점의 절사/반올림 등에 의한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임
- 2025년 이후 급여 이용자 ‘계’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합산하여 단순화함
- 시설요양보호사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에 따라 2021년까지는 이용자 2.5명당 1명, 2022~2024년은 이용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적용하였으며, 2025년부터는 2명당 1명으로 추계함(보건복지부, 2025)
- 재가요양보호사는 이용자 1.2명당 1명으로 추계함
- 강화군은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정자의 85.85%가 급여를 이용하고 있으며, 시설이용자는 33.86%, 재가 이용자는 66.14%의 비율임
- 옹진군은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정자의 89.74%가 급여를 이용하고 있으며, 시설이용자는 43.18%, 재가 이용자는 56.82%의 비율임
- 중구는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정자의 88.78%가 급여를 이용하고 있으며, 시설 이용자는 31.16%, 재가이용자는 68.84%의 비율임

- 동구는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정자의 87.43%가 급여를 이용하고 있으며, 시설 이용자는 22.42%, 재가이용자는 77.58%의 비율임
- 미추홀구는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정자의 88.11%가 급여를 이용하고 있으며, 시설이용자는 24.57%, 재가이용자는 75.43%의 비율임
- 연수구는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정자의 90.34%가 급여를 이용하고 있으며, 시설이용자는 27.46%, 재가이용자는 72.54%의 비율임
- 남동구는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정자의 89.53%가 급여를 이용하고 있으며, 시설이용자는 27.49%, 재가이용자는 72.51%의 비율임
- 부평구는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정자의 88.88%가 급여를 이용하고 있으며, 시설이용자는 24.41%, 재가이용자는 75.59%의 비율임
- 계양구는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정자의 89.63%가 급여를 이용하고 있으며, 시설이용자는 33.18%, 재가이용자는 66.82%의 비율임
- 서구는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정자의 89.29%가 급여를 이용하고 있으며, 시설 이용자는 32.19%, 재가이용자는 67.81%의 비율임

〈표 4-18〉 인천시 군·구별 요양보호사 수요 추계

(단위: 명)

구분		2017	2019	2022	2024	2025	2026	2028	2030	2035	
강 화 군	65세 이상 인정자수	1,637	2,213	2,728	3,110	3,229	3,429	3,804	4,142	5,018	
	65세 이상 급여이용자	계	1,417	1,837	2,300	2,670	2,772	2,944	3,266	3,556	4,308
		시설	626	741	839	916	951	1,010	1,120	1,220	1,478
		재가	804	1,115	1,533	1,789	1,821	1,934	2,146	2,336	2,830
	필요 요양보호사	계	920	1,226	1,702	1,949	1,994	2,117	2,348	2,557	3,097
		시설	250	296	420	458	476	505	560	610	739
재가		670	929	1,282	1,491	1,518	1,612	1,788	1,947	2,358	
용 진 군	65세 이상 인정자수	325	377	481	536	540	579	659	731	896	
	65세 이상 급여이용자	계	294	330	425	481	450	483	550	610	747
		시설	134	153	170	193	194	208	237	263	323
		재가	89	123	212	254	256	274	312	346	425
	필요 요양보호사	계	128	164	240	297	340	363	413	456	533
		시설	54	61	62	85	96	104	118	130	160
재가		74	103	178	212	244	259	295	326	373	

제4장 인천시 요양보호사 및 교육기관 수급 추정

구분		2017	2019	2022	2024	2025	2026	2028	2030	2035	
중 구	65세 이상 인정자수	1,355	1,752	2,530	3,024	3,209	3,461	3,917	4,356	5,542	
	65세 이상 급여이용자	계	1,170	1,533	2,203	2,685	2,901	3,129	3,542	3,938	5,010
		시설	439	524	729	852	904	975	1,104	1,227	1,561
		재가	742	995	1,559	1,882	1,997	2,154	2,438	2,711	3,449
	필요 요양보호사	계	794	1,039	1,591	1,994	2,570	2,774	3,086	3,347	4,515
		시설	176	210	292	426	452	488	552	614	781
재가		618	829	1,299	1,568	2,118	2,286	2,534	2,733	3,734	
동 구	65세 이상 인정자수	1,042	1,276	1,709	2,021	2,005	2,095	2,308	2,490	2,849	
	65세 이상 급여이용자	계	906	1,115	1,510	1,767	1,761	1,840	2,027	2,187	2,502
		시설	266	301	351	398	395	413	455	490	561
		재가	645	793	1,183	1,377	1,366	1,427	1,573	1,697	1,941
	필요 요양보호사	계	644	781	1,103	1,953	1,326	1,386	1,527	1,647	1,885
		시설	106	120	262	426	188	196	216	234	267
재가		538	661	841	1,527	1,138	1,190	1,310	1,414	1,618	
미 추 홀 구	65세 이상 인정자수	4,907	6,349	8,184	9,584	9,949	10,547	11,651	12,520	15,700	
	65세 이상 급여이용자	계	4,309	5,503	7,138	8,444	8,766	9,292	10,265	11,031	13,833
		시설	1,491	1,644	1,837	2,073	2,154	2,283	2,522	2,711	3,399
		재가	2,828	3,823	5,336	6,363	6,612	7,009	7,743	8,320	10,433
	필요 요양보호사	계	2,953	3,843	5,245	6,204	6,535	6,928	7,653	8,224	10,313
		시설	596	658	799	901	1,026	1,087	1,201	1,291	1,619
재가		2,357	3,186	4,447	5,303	5,510	5,841	6,452	6,933	8,695	
연 수 구	65세 이상 인정자수	2,658	3,540	4,570	5,229	5,515	6,069	7,153	8,160	10,682	
	65세 이상 급여이용자	계	2,356	3,108	4,106	4,724	4,982	5,483	6,462	7,372	9,650
		시설	794	960	1,103	1,304	1,368	1,506	1,774	2,024	2,650
		재가	1,537	2,151	3,066	3,445	3,614	3,977	4,688	5,348	7,001
	필요 요양보호사	계	1,598	2,177	3,035	3,438	3,663	4,031	4,751	5,420	7,096
		시설	318	384	480	567	651	717	845	964	1,262
재가		1,281	1,793	2,555	2,871	3,012	3,314	3,906	4,456	5,834	
남 동 구	65세 이상 인정자수	5,186	6,954	9,356	10,941	11,556	12,478	14,047	15,544	19,234	
	65세 이상 급여이용자	계	4,650	6,162	8,360	9,795	10,346	11,171	12,576	13,916	17,219
		시설	1,607	1,831	2,307	2,703	2,844	3,071	3,458	3,826	4,734
		재가	3,062	4,338	6,210	7,128	7,501	8,100	9,118	10,090	12,485
	필요 요양보호사	계	3,194	4,347	6,178	7,115	7,605	8,212	9,245	10,230	12,659
		시설	643	732	1,003	1,175	1,355	1,463	1,646	1,822	2,254
재가		2,552	3,615	5,175	5,940	6,251	6,750	7,598	8,408	10,404	

구분		2017	2019	2022	2024	2025	2026	2028	2030	2035	
부 평 구	65세 이상 인정자수	5,592	6,929	9,111	10,700	10,969	11,705	12,986	14,141	16,842	
	65세 이상 급여이용자	계	4,914	6,066	7,976	9,510	9,749	10,403	11,542	12,568	14,969
		시설	1,689	1,890	2,086	2,343	2,380	2,540	2,817	3,068	3,654
		재가	3,256	4,188	6,028	7,255	7,369	7,864	8,724	9,500	11,315
	필요 요양보호사	계	3,389	4,246	5,930	7,065	7,274	7,762	8,612	9,378	11,169
		시설	676	756	907	1,019	1,133	1,209	1,342	1,461	1,740
		재가	2,713	3,490	5,023	6,046	6,141	6,553	7,270	7,917	9,429
	계 양 구	65세 이상 인정자수	2,804	3,728	4,996	5,759	6,112	6,668	7,603	8,615	9,805
		65세 이상 급여이용자	계	2,478	3,201	4,416	5,162	5,478	5,977	6,815	7,722
시설			1,004	1,205	1,460	1,755	1,818	1,983	2,261	2,562	2,916
재가			1,534	2,057	3,078	3,534	3,661	3,994	4,554	5,160	5,872
필요 요양보호사		계	1,680	2,196	3,200	3,708	3,916	4,272	4,871	5,520	6,282
		시설	402	482	635	763	866	944	1,077	1,220	1,389
		재가	1,278	1,714	2,565	2,945	3,050	3,328	3,795	4,300	4,894
서 구		65세 이상 인정자수	4,429	6,015	7,899	9,629	9,960	10,907	12,535	13,942	18,267
		65세 이상 급여이용자	계	3,897	5,273	7,032	8,598	8,894	9,739	11,193	12,449
	시설		1,552	1,934	2,301	2,826	2,863	3,135	3,603	4,007	5,251
	재가		2,448	3,345	4,865	5,953	6,031	6,604	7,590	8,442	11,060
	필요 요양보호사	계	2,661	3,561	5,055	6,190	6,389	6,996	8,041	8,943	11,717
		시설	621	774	1,000	1,229	1,363	1,493	1,716	1,908	2,500
		재가	2,040	2,788	4,054	4,961	5,026	5,503	6,325	7,035	9,217

주1: 재가급여는 복지용구급여 제외 값.

주2: 2017~2024년까지의 '계'에는 시설급여+재가급여+가족요양비+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에서 중복 수혜를 제거한 것으로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합한 값과는 차이가 있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25). 정보공개청구 자료.

제4절 인천시 요양보호사 수급 균형 도모

1. 인천시 요양보호사 수급 추정

- 앞선 분석을 종합하면, 앞으로 2035년까지 65세 이상 장기요양급여 이용자는 93,944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65세 이상 급여 이용자만을 고려했을 때 요양보호사는 68,802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됨
 - 2024년의 65세 이상 급여이용자의 급여 유형별 평균 비율(시설급여: 28.2%, 재가급여: 71.8%)이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한 후 2025년과 2035년에 필요한 요양보호사를 산출함
 - 2025년에는 41,073명이 필요하고, 시설에 7,550명, 재가에 33,528명이 필요함
 - 2035년에는 68,802명이 필요하고, 시설에 12,647명, 재가에 56,155명이 필요함
- 위의 추계 인원이 65세 이상 이용자이기 때문에 전체 이용자를 산출할 필요가 있음
-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급여이용자 중 65세 이상 급여이용자의 평균 비율은 95.24%임
 - 2021년 전체 장기요양인정자 50,941명,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48,289명
 - 2022년 전체 장기요양인정자 54,232명,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51,564명
 - 2023년 전체 장기요양인정자 58,921명,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56,222명
 - 2024년 전체 장기요양인정자 63,329명,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60,533명
 - 2021~2024년 전체 장기요양인정자 합계 227,423명,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합계 216,608명
- 이 같은 비율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전체 장기요양인정자를 추계하면 2025년 66,209명, 2035년은 약 110,905명으로 추정되며, 전체 급여이용자 수는 2025년 58,886명, 2035년 98,639명이 됨
- 2024년의 65세 미만 급여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 요양보호사의 경우, 급여 유형별 평균 비율(시설급여: 28.2%, 재가급여: 71.8%)이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한 후 2025년과 2035년의 추계를 산출함

- 2025년에는 2,054명이 필요하고, 시설 376명, 재가 1,677명이 필요함
- 2035년에는 3,440명이 필요하고, 시설 631명, 재가 2,809명이 필요함
- 전체 급여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필요 요양보호사 수를 산정한 결과, 2025년에는 41,073명(65세 이상 기준)과 2,054명(65세 미만 기준)을 합하여 43,127명이 필요함
- 2035년에는 68,802명(65세 이상 기준)과 3,440명(65세 미만 기준)을 합한 72,242명이 필요함
- 2020년 기준 인천시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누계인원은 89,114명이며(하석철, 김제희, 2021), 2021~2024년까지 자격증 발급 누계인원인 43,583명을 합하면 132,697명임
- 2024년의 인천시 요양보호사는 39,973명으로, 2024년까지의 자격증 발급 누계인원 132,697명의 30.1%가 실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2020년의 33.2%에 비해 자격증 발급인원 대비 활동 인원의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기준으로 전국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의 약 23.8%가 요양보호사로 종사한다는 기존 자료와 비교할 때(보건복지부, 2023a), 상대적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실제 활동 인구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인천시 요양보호사 공급 추계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현업에 종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보호사는 42,323명으로, 2025년 기준으로 전체 필요 요양보호사의 수(43,127명)에 약 804명이 부족한 상태로 나타남
- 그러나 2035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현업에 종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보호사는 65,823명으로, 전체 필요 요양보호사의 수(72,242명)에서 6,419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2. 인천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수급 추정

- 이하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수와 급여 유형별 이용자 수,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수, 근로(현업) 요양보호사 수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증대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함

- 이를 위해 먼저, 교육기관 규모 추계를 위한 산출식을 구성하면 아래와 같음
 - 재가급여 이용률의 증가분의 평균은 0으로, 향후 현재의 비율을 유지한다고 전제함($\alpha=0$)

당해 연도 노인급여이용자 수(A) = 당해 연도 노인인구(추계) × (전년도 전체 노인인구 대비 노인 인정자 비율 + 0.000867) × 노인 장기요양인정자 대비 노인급여이용자 값(0.8894)

당해 연도 비노인급여이용자 수(B) = (A / 0.9524) - A

당해 연도 노인재가급여이용자(C) = A × (전년도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이용률 + α)

당해 연도 노인시설급여이용자(D) = A - C

노인 추정 필요 요양보호사(E) = (C / 1.2) + (D / 2.1)²⁰⁾

비노인 추정 필요 요양보호사(F) = (B × 0.718 / 1.2) + (B × 0.282 / 2.1)

총 필요 요양보호사(G) = E + F

추정 근로(현업) 요양보호사(H) = 전년도 현업요양보호사 인원 + (현업요양보호사 증가량 평균²¹⁾)

G > H = 요양보호사 신규 증원 필요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규 지정 허용

G < H = 요양보호사 신규 증원 불필요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규 지정 제한

α : 노인 재가급여 이용률 증가분(평균)

- 위의 식을 이용하여 각 추정값을 산출해 보면, 2025년 기준 총 43,127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하나, 현업 요양보호사는 42,323명으로 추정되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약 804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됨(〈표 4-19〉 참고)

20) 2025년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바탕으로 재가급여의 경우 요양보호사 1인당 노인 1.2명, 시설급여 이용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 반영.

21) 2021~2024년 평균값(연수구 제외).

- 2025년 이후 지속적으로 요양보호사 수의 부족현상이 지속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안정적인 요양보호사 수급을 위해 교육기관 확대 및 기존 자격증 취득자의 요양보호사로의 입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현재 기준에서 신규 요양보호사 수 증원을 위해서는 신규 교육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음
 - 2025년 기준 804명의 현업 요양보호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29.66%의 추정활동률을 고려하였을 때 약 2,711명의 신규 자격증 취득자가 필요함
 - 향후 10년 뒤인 2035년 기준으로 현업에 종사할 요양보호사의 수가 6,419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26.1%의 추정활동률을 고려하였을 때 약 24,594명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가 더 필요한 것을 의미함

〈표 4-19〉 인천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규 지정 필요 여부(2025년 기준)

(단위: 명)

노인 급여이용자(A)	비노인 급여이용자(B)	노인 재가급여 이용자(C)	α2030까지	α2035까지	노인 시설급여 이용자(D)
63,057	2,803	40,228	0	0	15,855
노인 필요 요양보호사(E)	비노인 필요 요양보호사(F)	총 필요 요양보호사(G)	추정 근로 요양보호사(H)	G-H	신규 교육기관 지정 필요 여부
41,073	2,054	43,127	42,323	804	필요함

- 더불어 앞선 산식을 이용하여 인천시 노인 급여이용자와 비노인 급여이용자, 각 이용자 수에 기초한 필요 요양보호사 수를 추계하여 정리하면 〈표 4-20〉 과 같음

〈표 4-20〉 인천시 급여이용자 및 필요 요양보호사 추계(2025~2035년)

(단위: 명)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5
노인 급여이용자	계	56,083	60,489	64,208	38,361	71,712	75,532	93,944
	시설	15,855	17,101	18,152	19,326	20,273	21,353	26,558
	재가	40,228	43,388	46,056	49,035	51,439	54,179	67,386
비노인 급여이용자	계	2,803	3,023	3,209	1,917	3,584	3,775	4,695
	시설	790	853	905	541	1,011	1,065	1,324
	재가	2,013	2,171	2,304	1,377	2,573	2,710	3,371
급여이용자 (계)	계	58,886	63,512	67,417	40,278	75,296	79,307	98,639
	시설	16,645	17,954	19,057	19,867	21,284	22,418	27,882
	재가	42,241	45,559	48,360	50,412	54,012	56,889	70,757
노인 필요 요양보호사	계	41,073	44,300	47,024	50,065	52,520	55,317	68,802
	시설	7,550	8,143	8,644	9,203	9,654	10,168	12,647
	재가	33,523	36,157	38,380	40,862	42,866	45,149	56,155
비노인 필요 요양보호사	계	2,054	2,215	2,351	1,405	2,626	2,766	3,440
	시설	376	406	431	257	481	507	631
	재가	1,677	1,809	1,920	1,147	2,144	2,259	2,809
필요 요양보호사 (계)	계	43,127	46,515	49,375	51,470	55,146	58,083	72,242
	시설	7,926	8,549	9,075	9,460	10,135	10,675	13,278
	재가	35,200	37,966	40,300	42,009	45,010	47,408	58,964

주1: 재가급여는 복지용구급여 제외 값.

주2: 소수점 이하 처리 문제로 인해 〈표 4-16〉의 값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3. 군·구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수급 추정

- 군·구별 수급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앞서 제시하였던 산출식을 각 지역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함
- 재가급여 이용률의 증가분의 평균은 0으로, 향후 현재의 비율을 유지한다고 전제함 ($\alpha=0$)
- 노인 재가급여 이용률 증가분(평균)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δ 값을 0으로 가정함
- 해당 부분은 향후 정책 방향에 따라 재가급여 이용률 확대 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전체 급여이용자 중 노인 급여이용자 비율(평균)은 군구별 자료 대신 인천시 전체 값인 0.9524로 대체하여 사용함
- ϵ 값인 비노인 재가급여 이용률(평균) 및 ζ 값인 비노인 시설급여 이용률(평균)의 경우 자료의 한계상 노인 급여이용률로 대체하여 사용함

당해 연도 노인급여이용자 수(A) = 당해 연도 노인인구(추계) × (전년도 전체 노인인구 대비 노인 인정자 비율 + α) × β

당해 연도 비노인급여이용자 수(B) = (A / γ) - A

당해 연도 노인재가급여이용자(C) = A × (전년도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이용률 + δ)

당해 연도 노인시설급여이용자(D) = A - C

노인 추정 필요 요양보호사(E) = (C / 1.2) + (D / 2.1)

비노인 추정 필요 요양보호사(F) = (B × ϵ / 1.2) + (B × ζ / 2.1)

총 필요 요양보호사(G) = E + F

추정 근로(현업) 요양보호사(H) = 전년도 현업요양보호사 인원 + (현업요양보호사 증가량 (2021~2024년도 평균) × 군구별 현업요양보호사 비율²²⁾)

G > H = 요양보호사 신규 증원 필요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규 지정 허용

G < H = 요양보호사 신규 증원 불필요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규 지정 제한

α : 노인 장기요양인정률 증가분(평균), β : 노인 장기요양인정자 대비 노인급여이용자 값

γ : 전체 급여이용자 중 노인 급여이용자 비율(평균),

δ : 노인 재가급여 이용률 증가분(평균)

ϵ : 비노인 재가급여 이용률(평균), ζ : 비노인 시설급여 이용률(평균)

22) 모든 증가량에는 연수구를 제외함.

- 상기 식을 이용하여 2025년 기준 인천시 10개 군·구별 급여이용자와 필요 요양보호사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규 지정 필요 여부를 제시하면 <표 4-21>과 같음
- 2025년 기준으로 총 필요요양보호사에 비해 현업에 근로하는 요양보호사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중구가 712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강화군으로 620명, 동구가 312명, 용진군이 210명, 연수구가 44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중구, 강화군, 동구, 용진군, 연수구의 경우 신규 교육기관 지정시 우선순위 지역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그 외에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미추홀구, 서구, 연수구는 요양보호사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근무한다고 전제하였을 때 요양보호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높아 신규 교육기관 지정시 후순위로 고려할 지역으로 나타남

<표 4-21> 인천시 군·구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규 지정 필요 여부(2025년 기준)

(단위: 명)

구분	노인 급여이용자 (A)	α	β	비노인 급여이용자 (B)	γ	노인 재가 급여이용자 (C)	δ	노인 시설 급여이용자 (D)
강화군	2,772	0	0.8585	139	0.9524	1,821	0	951
용진군	540	0	0.8974	22	0.9524	256	0	194
중구	2,901	0	0.8878	145	0.9524	1,997	0	904
동구	1,761	0	0.8743	88	0.9524	1,366	0	395
미추 홀구	8,766	0	0.8811	438	0.9524	6,612	0	2,154
연수구	4,982	0	0.9034	249	0.9524	3,614	0	1,368
남동구	10,346	0	0.8953	517	0.9524	7,501	0	2,844
부평구	9,749	0	0.8888	487	0.9524	7,369	0	2,380
계양구	5,478	0	0.8963	274	0.9524	3,661	0	1,818
서구	8,894	0	0.8929	445	0.9524	8,894	0	2,863

구분	노인 필요 요양보호사 (E)	비노인 필요 요양보호사 (F)	ε	ζ	총 필요 요양보호사 (G)	근로 요양보호사 (H)	G-H	신규 교육기관 검토
강화군	1,994	101	0.6614	0.3386	2,095	1,475	620	우선순위
옹진군	340	16	0.5682	0.4318	356	146	210	우선순위
중구	2,570	106	0.6884	0.3116	2,676	1,964	712	우선순위
동구	1,326	64	0.7543	0.2457	1,390	1,078	312	우선순위
미추 홀구	6,535	321	0.7543	0.2457	6,856	7,437	-581	후순위
연수구	3,663	182	0.7254	0.2746	3,845	3,801	44	우선순위
남동구	7,605	379	0.7251	0.2749	7,984	8,998	-1,014	후순위
부평구	7,274	357	0.7559	0.2441	7,631	8,262	-631	후순위
계양구	3,916	201	0.6682	0.3318	4,117	7,234	-3,117	후순위
서구	6,389	326	0.6781	0.3219	6,715	7,052	-337	후순위

○ 향후 군·구별 총 필요 요양보호사 수를 앞서 제시한 산출식을 이용하여 추계하여 정리하면 <표 4-22>와 같음

<표 4-22> 인천시 군·구별 필요 요양보호사 추계(2025~2035년)

(단위: 명)

구분		2025	2026	2028	2030	2035
강화군	계	2,095	2,225	2,468	2,687	3,255
	시설	495	525	582	634	768
	재가	1,601	1,700	1,886	2,053	2,487
옹진군	계	356	381	433	478	560
	시설	99	107	122	134	165
	재가	257	273	311	344	395

구분		2025	2026	2028	2030	2035
중구	계	2,676	2,889	3,216	3,491	4,698
	시설	471	509	576	640	815
	재가	2,205	2,380	2,640	2,851	3,884
동구	계	1,390	1,453	1,601	1,727	1,977
	시설	200	208	230	249	284
	재가	1,191	1,245	1,371	1,479	1,693
미추홀구	계	6,856	7,268	8,029	8,628	10,820
	시설	1,085	1,149	1,270	1,365	1,712
	재가	5,772	6,119	6,759	7,263	9,109
연수구	계	3,845	4,232	4,988	5,690	7,449
	시설	684	754	888	1,013	1,327
	재가	3,161	3,478	4,099	4,676	6,123
남동구	계	7,984	8,621	9,705	10,740	13,289
	시설	1,424	1,538	1,730	1,915	2,370
	재가	6,560	7,084	7,974	8,824	10,919
부평구	계	7,631	8,143	9,035	9,838	11,717
	시설	1,198	1,279	1,419	1,545	1,840
	재가	6,433	6,864	7,615	8,293	9,877
계양구	계	4,117	4,491	5,121	5,803	6,604
	시설	903	984	1,123	1,272	1,448
	재가	3,214	3,507	3,999	4,531	5,157
서구	계	6,715	7,353	8,451	9,399	12,314
	시설	1,423	1,558	1,791	1,992	2,609
	재가	5,292	5,794	6,660	7,407	9,705

주1: 재가급여는 복지용구급여 제외 값

주2: 소수점 이하 처리 문제로 인해 <표 4-18>의 값과 다소 상이할 수

5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인천시 및 군·구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적정규모 추정

제2절 정책적 제언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인천시 및 군·구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적정규모 추정

1. 인천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규 지정 필요성 검토

-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수 추계를 통해 향후 필요한 요양보호사 수요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신규 지정 필요성을 검토함
- 인천시의 65세 이상 장기요양 인정자 수는 2017년 29,935명에서 2024년 60,533명으로 약 2배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필요 요양보호사 수도 17,962명에서 39,163명으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됨
- 2025년 기준 인천시의 65세 이상 장기요양 인정자 수는 63,057명, 필요 요양보호사 수는 약 41,073명으로 추정되며, 2035년에는 각각 105,626명과 68,802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인천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2024년 기준 총 28개소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 평균 11,226명의 합격자를 배출함
- 2024년 기준 인천시 요양보호사는 39,973명으로, 자격증 발급 누계 132,697명 중 약 30.1%가 실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0년의 33.2%에 비해 활동 비율이 다소 감소한 수준임
- 요양보호사 공급 추계에 따르면, 2025년 현업에 종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보호사는 42,323명으로, 전체 필요 요양보호사 수인 43,127명에 약 804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2035년에는 현업 종사 요양보호사가 65,823명으로, 전체 필요 인원(72,242명)에 비해 6,419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2025년 기준 부족 인원 804명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29.66%의 추정활동률을 고려할 때 약 2,711명의 신규 자격 취득자가 필요하며, 2035년의 부족 인원 6,419명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약 24,594명의 신규 자격 취득자가 추가로 양성되어야 함
-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인천시의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 증가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의 활동을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신규 인력 양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신규 지정 및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 군·구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규 지정 필요성 검토

- 인천시는 대도시와 농·어촌이 공존하는 복합 도시로, 지역별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와 요양보호사 공급 수준 간 편차가 존재함
- 본 연구에서는 2025년 기준 인천시 10개 군·구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수 및 필요 요양보호사 수를 기초로, 지역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신규 지정 필요성을 검토함
- 2025년 기준 총 필요 요양보호사 수 대비 현업 근로 요양보호사 추정치를 비교한 결과 중구 712명, 강화군 620명, 동구 312명, 옹진군 210명, 연수구 44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중구, 강화군, 동구, 옹진군, 연수구는 신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시 우선순위 지역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반면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미추홀구, 서구는 요양보호사가 거주 지역 내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요양보호사 공급이 수요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규 지정의 우선순위가 낮은 지역으로 분석됨

제2절 정책적 제언

1. 유휴 요양보호사 현장 유입 지원 방안 마련

- 2025~2035년 요양보호사 공급 추계 결과, 자격증 취득 대비 현업 종사 요양보호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향후 10년간 요양보호사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2024년 기준 약 70% 수준에 해당하는 유휴 요양보호사의 현장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함
- 2021년 보고서에서도 유휴 요양보호사 복귀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귀지원 프로그램은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단순한 재교육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현장 복귀 의지를 높이고 실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표 5-1>과 같이 이론·실무·행정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된 ‘유휴 요양보호사 유입 지원 맞춤형 교육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유휴 인력의 직무 역량 회복과 현장 적응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음
- 이와 함께 지자체와 요양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복귀 희망자 데이터베이스(DB)를 지역 일자리 매칭 플랫폼과 연계함으로써, 실시간 구인·구직 지원이 가능한 복귀지원 통합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인천시 유휴 요양보호사들의 복귀 기피 요인(근로조건, 업무환경, 경력단절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정책 설계에 반영한 맞춤형 복귀지원 모델을 구축할 경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표 5-1〉 유휴 요양보호사 유입 지원 맞춤형 교육체계(안)

구분	교육 내용	주요 담당
이론	요양보호사 관련 제도 및 서비스 현황,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요양보호사 인권 보호 등	전문가
실무	섭취 요양보호, 배설 요양보호,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체위변경 및 이동 요양보호 등	전문가 및 요양보호사
행정	요양보호 기록, 업무보고, 업무회의	요양보호사 및 장기요양기관장

2. 현업 종사자의 재직 유지율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

- 2025~2035년 요양보호사 공급 추계에서는 자격증 취득 대비 현업종사 요양보호사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향후 10년간 요양보호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는 단순히 신규 인력을 양성하는 것만으로는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기존 인력의 재직 유지와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
 - 이는 궁극적으로 인력양성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의 숙련도와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강화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취약한 근로조건 등으로 요양보호사의 높은 이직률과 근속기간이 단축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
 -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연속성 저하, 신규 인력 양성비용 증가, 기관 내 업무공백 등으로 이어져 돌봄서비스의 품질 저하 및 공급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음
-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요양보호사의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조직 및 직무환경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최혜진 외, 2024)
- 개인 요인 중 직무만족(김민희, 방현령, 2018; 오진주 외, 2019; 임현승, 2023; 천기선 외, 2022)과 직무 요인 중 직무 스트레스(박선숙, 2022; 배혜원, 김태은, 2022; 오진주 외, 2019; 이은아, 구현수, 2020; 임현승, 2023; 천기선 외, 2022)

가 이직의도와 일관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조직 요인 중에는 대인관계 특히 상사 및 동료의 지지가 높을수록(박선숙, 2022; 오진주 외, 2019; 임현승, 2023) 이직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현업 종사자의 재직 유지율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선행연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인식하는 전문성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남성진, 2019; 한국철·최낙관, 2013)
 - 따라서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보수교육 및 전문 직무교육 등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확대·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이러한 경력개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요양보호사 개개인의 맞춤형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경력개발 상담 제도를 도입한다면 전문성 향상과 직무만족 제고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직무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관련해서는 사회적 지지가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한다는 연구결과(임현승, 2023)에 기반하여 요양보호사 대상 조직문화 차원에서의 지지문화 형성,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해서도 인천광역시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리더십교육의 일환으로 관리자, 시설장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방법 교육 등이 제공되고 있으나, 동료 간 지지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현업 종사자 간 상호 존중, 소통 강화를 위한 조직문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추가적으로 대인관계 갈등 및 의사소통 문제를 줄이기 위한 교육 및 매뉴얼 마련 또한 고려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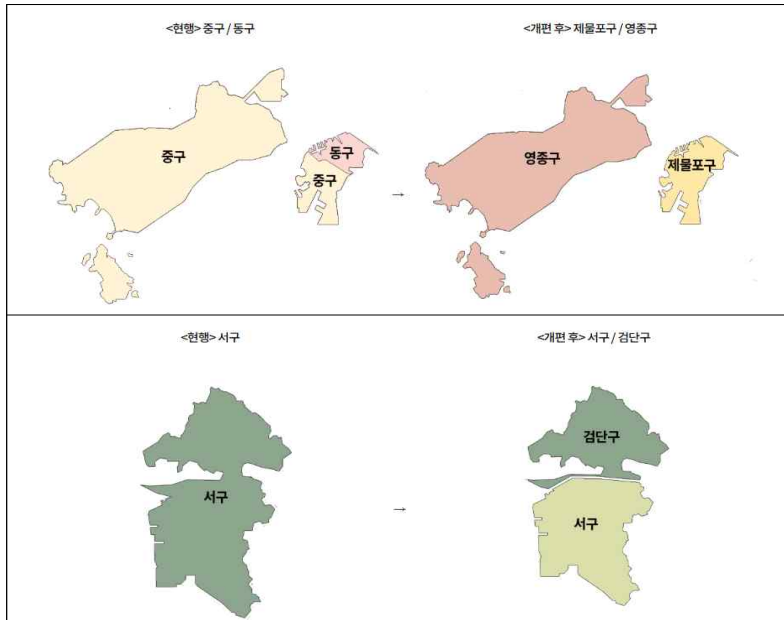
3. 신규 교육기관 지정 시 인천시 특성 및 향후 행정체제 개편 사항 고려 필요

- 분석 결과,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자격 취득자 대비 현업 활동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신규 지정 및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신규 지정·설치에 있어서는 인천시가 도시 지역과 농어촌·도서 지역이 공존하는 복합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강화군과 옹진군 등 도서 지역의 경우 추계 결과에 따르면 교육기관 신규 지정을 통한 요양보호사 인력 확충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실제 교육기관 설치 수요 및 접근성을 감안할 때 해당 군·구 내 설치가 현실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음
- 이에 따라 도서 지역 주민의 교육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접 지역(예: 인접 육지 지역)에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인천시는 현재 2군(강화군, 옹진군)과 8구(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2026년 7월 1일부터 2군(강화군, 옹진군), 9구(영종구, 제물포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검단구) 체제로 개편될 예정임
- 세부적으로는 <그림 5-1>과 같이 생활권 중심의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 중이며, 현 중구 내륙지역과 동구를 통합하여 '제물포구'로, 중구 섬지역은 분리하여 '영종구'로 신설할 계획임
- 또한, 서구는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북부지역은 '검단구'로, 남부지역은 '서구'로 분구될 예정임
-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한계로 행정체제 개편 이후의 상황을 반영한 추계는 수행하지 못하였으나, 2025년 기준 군·구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수급 추정 결과에서 중구와 동구가 신규 교육기관 우선순위 지역으로 분석됨
- 이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 후에는 제물포구와 영종구 지역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규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서구는 2025년 기준 요양보호사 공급이 수요보다 높아 신규 지정 우선순위에 서는 후순위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나, 분구 이후 서구에는 3개, 검단구에는 1개의 교육기관이 위치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검단구는 검단신도시 개발로 향후 인구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요양보호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교육기관 지정 필요성이 존재함

〈그림 5-1〉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 사항



자료: 인천광역시(2025b),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4.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인증제 도입 검토

- 요양보호사 신규 교육기관 지정 확대 논의와 더불어, 교육기관의 질적 수준 관리가 병행되어야 함
-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기관 간 운영 여건, 강의 품질, 실습 관리 수준의 편차가 커 교육의 신뢰성과 현장 적합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음(보건복지부, 2023b)

- 이에 단순한 양적 확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교육 품질의 표준화 및 질 관리 강화까지 고려가 필요한 시점임
- 요양보호사 교육은 고령사회 돌봄 인력의 핵심 역량을 결정하는 출발점으로, 교육 품질 저하는 곧 현장 서비스의 질 저하와 직결됨(김봉화, 고윤순, 2024)
- 특히 일부 기관에서는 과도한 경쟁과 수익 중심 운영으로 인해 교육시간 축소, 실습 부실, 강사 자격 기준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자격 취득자의 현장 실무 역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오종민, 2025; 서울특별시의회, 2024; MBC, 2025)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서울특별시에서는 교육기관 품질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25년 9월 통과됨
- 조례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될 경우 2026년 7월 1일부터 ‘서울형 좋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인증제’가 시행될 예정임
- 해당 인증제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좋은돌봄인증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시설환경, 안정성, 운영의 건전성 등을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사후관리까지 수행하는 제도를 의미함
 - 조례안에 제시된 세부 인증 기준에는 교육에 적합한 기관의 시설환경, 우수한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강사 인력 확보,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한 출결관리, 실습기관의 환경 및 실습지도자의 역량 등이 포함되어 있음(서울특별시의회, 2024)
 - 이는 단순한 감독 중심의 사후 관리가 아니라, 자율적 품질 관리와 경쟁력 강화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우수기관 중심의 인력 양성 구조를 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 인천시 또한 고령화 추세와 요양서비스 수요 구조를 감안할 때, 서울시의 인증제 추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인천형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인증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향후 신규 교육기관 지정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관별 교육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 간 교육 품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인천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인증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음

- 교육기관 인증 기준 마련: 시설, 강사진, 실습관리, 운영 투명성, 교육성과 등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 인증기관 인센티브 부여: 인증 등급에 따라 교육생 모집 지원, 시 홈페이지 공시, 행정지원 우대 등 차등 혜택 부여
 - 정기 평가 및 환류 체계: 2~3년 주기의 정기 평가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질적 개선을 유도하고, 우수사례 확산 추진
- 결론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인증제 도입은 단순히 기관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춘 돌봄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
- 따라서 인천시 차원에서도 인증제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검토 및 시범운영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국내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a). 「2024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b).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longtermcare.or.kr>. (검색일 2025-08-08).
- 김봉화·고윤순. (2024). 요양보호사의 교육, 서비스 질, 전문성, 긍정심리자본의 관계 연구. 문화기술의 융합, 10(3), 613-623.
- 김민희·방현령. (2018).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일가치감이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73(3), 83-112.
- 김지영·장창수·최미영·성민현. (2020). 「대전광역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 및 수요분석 연구」. 대전복지재단.
- 남성진. (2019).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 만족도의 관계에서 직무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10), 543-550.
- 박명선·강상목. (2010).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전문직 종사자의 수요 예측: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한국통계학회논문집, 17(3), 423-440.
- 박선숙. (2022). 요양보호사의 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리뷰, 7(1), 1-32.
- 박하정. (2008). 「사회복지정책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복지 입법 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배혜원·김태은. (2022).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제공 여성 요양보호사의 이직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공사회연구, 12(3), 141-173.
- 보건복지부. (2013). 「2013-2017 제1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 보건복지부. (2015). 「보건복지 70년사」.
- 보건복지부. (2018).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 보건복지부. (2023a). 「2023-2027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 보건복지부. (2024). 「2024년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 보건복지부. (2025). 「2025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서울특별시의회. (2024).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 선우덕·이윤경·김진수·유근춘·석재은·강임옥·양찬미·이은진. (2012). 「제1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엄기욱. (2011).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지역발전연구, 10(2), 87-112.
- 양옥남·김혜경·김미숙·정순돌. (2012). 「노인복지론」. 공동체.
- 오진주·김영선·김선희·고현민. (2019). 요양보호사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보건연구, 45(2), 1-12.
- 원시연. (2009).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실태조사」. 국회입법조사처.
- 이은아·구현수. (2020). 재가노인복지센터 여성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을 조절변인으로. 산업융합연구, 18(5), 54-61.
- 이윤경·정형선·석재은·송현종·서동민·이정석·유애정·이호용·권진희·한은정·김찬우·박진화·엄기욱·이민홍·이용재·장숙랑·전용호·정경희·선우덕·강은나·신화연·이선희·배혜원. (2017).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현승. (2023).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2(2), 417-438.
- 윤민석·문진영. (2019).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운영 쟁점과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 인천광역시. (2020). 여성가족국 노인정책과 내부자료 「인천광역시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 기준 수립 계획(안)」.
- 장창수·최미영. (2017). 대전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적정규모 수요 추계에 관한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 천기선·손매용·김기정·신영일. (2022). 노인장기요양시설종사자의 이직의도 관리방안 연구: 역할갈등과 역할과다를 중심으로. 사회복지경영연구, 9(2), 115-135.
- 최혜진·유은지·김홍수. (2024).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 관련 요인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30(3), 32-60.
- 하석철·김제희. (2021). 인천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적정규모 추계 연구. 인천사회서비스원·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 한국철·최낙관. (2013).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치행정학보, 27(4), 269-287.
- 법제처. (2008). 「노인복지법」.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08974,20080321\)](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08974,20080321)). (검색일: 2025-08-08).
- 법제처. (2020).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시행규칙>. (검색일: 2025-09-30).
- 법제처. (2023). 「노인복지법」.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 (검색일: 2025-08-08).
- 법제처. (20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검색일: 2025-08-08).
- 법제처. (2025a).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검색일: 2025-08-08).
- 법제처. (2025b).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검색일: 2025-08-08).
- 법제처. (2025c).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시행규칙>. (검색일: 2025-08-08).
- 보건복지부. (2023b).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 실태 전수조사 실시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377555.
- 오종민. (2025.9.7.). 무분별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 관리·감독 사각지대. 경기일보.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907580210>.
- 인천광역시. (2025a). 「인천광역시 군구별 장래인구추계 통계표(2020~2040년)」, <https://www.incheon.go.kr/search/search?kwd=%EC%9E%A5%EB%9E%98%EC%9D%B8%EA%B5%AC%EC%B6%94%EA%B3%84>(검색일: 2025-8-29).
- 인천광역시. (2025b).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https://www.incheon.go.kr/IC0107010>.
- 통계청. (2023). 「2022년 생명표」. <https://kosis.kr>.
- 통계청. (2024a).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 시도'. 「장래인구추계」. <https://kosis.kr>. (검색일: 2025-08-09).

- 통계청. (2024b) 고시 제2024-328호. 「한국표준직업분류」.
https://kostat.go.kr/board.es?mid=a10403040000&bid=107&act=view&list_no=431582 (검색일 2025-03-31).
- 통계청. (2025a).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전국', 「장래인구추계」.
<https://kosis.kr>. (검색일: 2025-08-09).
- 통계청. (2025b). '시·군·구별 장기요양기관 전문인력 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https://kosis.kr>. (검색일: 2025-08-09).
- 통계청. (2025c). '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 「주민등록인구현황」.
<https://kosis.kr>. (검색일: 2025-08-09).
- 통계청. (2025d). '시·군·구별 자격별 의료보장 적용 인구 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https://kosis.kr>. (검색일: 2025-08-25).
- 통계청. (2025e). '시·군·구별 자격별 인정 신청 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https://kosis.kr>. (검색일: 2025-08-25).
- 통계청. (2025f). '시·군·구별 등급별 자격별 등급 판정 현황(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https://kosis.kr>. (검색일: 2025-08-26).
- 통계청. (2025g). '시·군·구별 등급별 급여종류별 장기요양 급여실적'.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https://kosis.kr>. (검색일: 2025-08-26).
- 통계청. (2025h). '연도별 시·도별 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기관 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https://kosis.kr>. (검색일: 2025-08-27).
- 통계청. (2025i). '시·군·구별 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기관 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https://kosis.kr>. (검색일: 2025-08-27).
- 통계청. (2025j). '시·군·구별 장기요양기관 인력 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https://kosis.kr>. (검색일: 2025-08-28).
- 한국보건의료국가시현원. (2025). 지역별 요양보호사인원통계.
<https://www.data.go.kr/data/15132471/fileData.do>.
- 이해선. (2024.9.5.). 허위 '인증샷' 찍고 출석부 조작...영터리 요양보호사 자격증 여전. MBC.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34160_36515.html.

인천광역시 고령사회대응센터 정책연구 2025-2

인천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적정규모 추계 연구

발행일 || 2025년 12월

발행인 || 박정숙

발행처 || 인천광역시 고령사회대응센터

주소 || (221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10층

전화 || (032)715-5491 팩스 || (032)715-5319

홈페이지 || <https://www.inlife.or.kr/>

인쇄 || 모든광고기획 (032)891-4911

ISBN 979-11-90449-14-4 : 비매품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인천광역시 고령사회대응센터에 있으며,
본 센터의 허락 없이 무단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